

옥외광고물 안전 표준 매뉴얼

201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옥외광고물 안전 표준 매뉴얼

주관연구기관 :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기관장 : 대 표 최 진 주

연구 기 간 : 2013. 9. 16 ~ 11. 18.

■ 연구책임자 : 이 원 호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공학박사•건축구조기술사

■ 공동연구원 : 황보 석 (주)ES건축구조엔지니어링 대표•공학박사•건축구조기술사
양 원 직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연구교수•공학박사

■ 연구보조원 : 김 동 규 (주)ES건축구조엔지니어링 차장
강 지 은 (주)ES건축구조엔지니어링 대리

■ 자 문 위 원 : 김 찬 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이 승 수 충북대학교 엔지니어링 대리
권 기 환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계장
박 종 복 소방방재청 안전제도와 계장
강 상 현 금천구청 주무관
김 영 배 콜커스 대표
이 대 인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부회장

본 보고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공식 견해가 아닌 연구진들의 연구결과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업무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제 I 편 옥외광고물 현황

• 1

제1장 옥외광고물의 개요 및 현황	5
제2장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	8
제3장 국내외 옥외광고물 안전 관련 법령 현황분석(안)	10
제4장 옥외광고물 안전체계 확보를 위한 향후과제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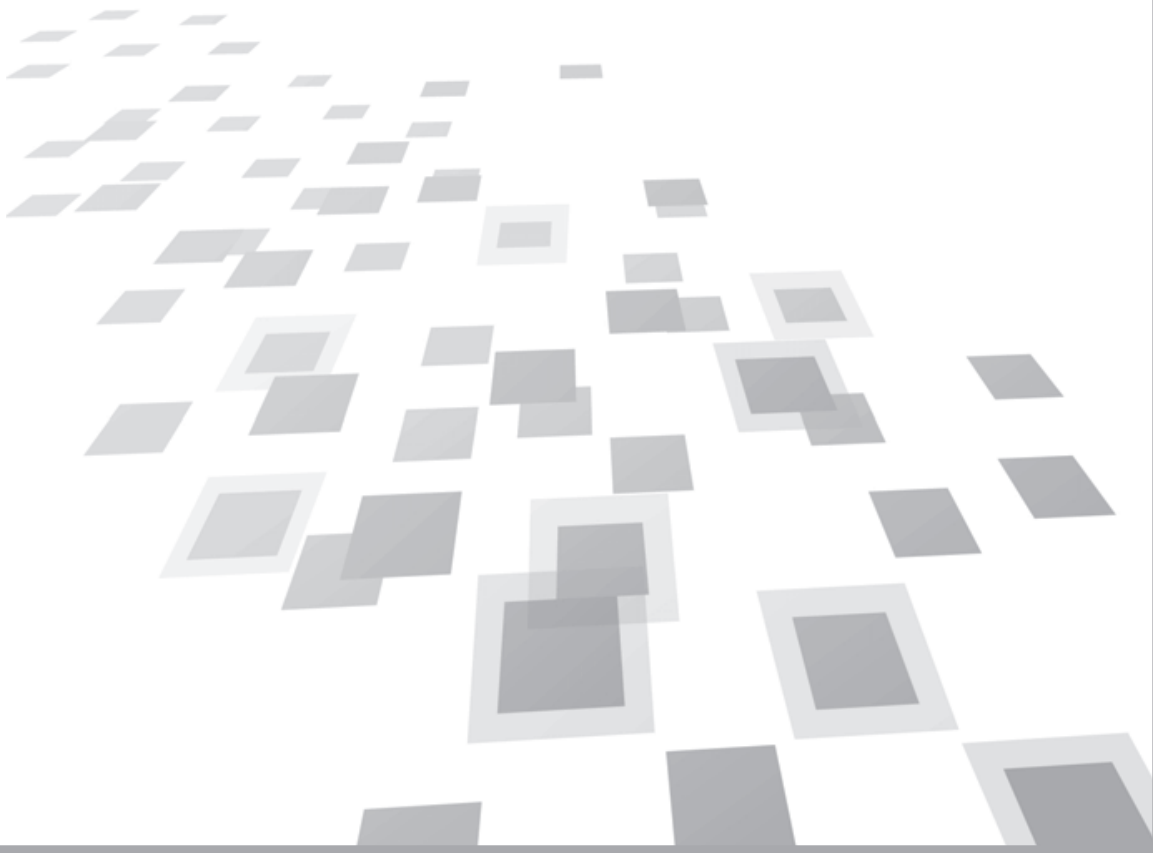
제 II 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안)

• 17

제1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안)	21
제2장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안)	60
* 참고문헌	73
* 부록. 옥외광고물 유형별 안전사고 사례	75

제 I 편

옥외광고물 현황



<목차>

제 I 편 옥외광고물 현황

제1장 옥외광고물의 개요 및 현황

1.1 개요	5
1.2 옥외광고물의 설치 현황	5
1.2.1 2011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5
1.2.2 2011년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	5
1.3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인력 및 업무량 현황	6
1.3.1 직급 및 업무 수행기간에 따른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현황	6
1.3.2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당 업무량	6

제2장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

2.1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발생현황	8
2.2 옥외광고물 유형별 안전사고 분석	8
2.3 종합분석	8
2.4 광고물의 파손 유형별 증상 및 대책	9

제3장 국내외 옥외광고물 안전 관련 법령 현황분석(안)

3.1 국내외법령현황	10
3.2 문제점	10
3.3 대책	11

제4장 옥외광고물 안전체계 확보를 위한 향후과제

4.1 옥외광고물 관련법의 정비 필요	14
4.2 옥외광고물 관리조식 체계 구성	14
4.3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매뉴얼 고도화(전산화) 필요	15
4.4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기준 제정	15
4.5 옥외광고물 게시 표준설계도 개발	16
4.6 옥외광고물 안전교육 체계 개발	16
4.7 옥외광고물 보상 공제 체계 개발	16

제 I 편 옥외광고물 현황

제1장 옥외광고물의 개요 및 현황

1.1 개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공공시설물'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광고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법규의 미비 등으로 안전관리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연재해 중 강풍에 취약하고, 파손·추락 등의 사고발생시 도시 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소유주 이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인명 및 재산상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안전에 대하여 중점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설치 주체와 시공자에게 사유시설물 및 공공시설물로서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계도하고 안전관련 법규의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근본적으로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광고물이 게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옥외광고물의 설치 현황

2009년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을 기준으로 동당 약 6.57개의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2011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약 750만~800만 개의 광고판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2.1 2011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한국옥외광고센터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559,017건의 옥외광고물이 허가·신고 되었다.

1.2.2 2011년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125,121,839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다.

고정광고물의 경우 적정한 절차에 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강풍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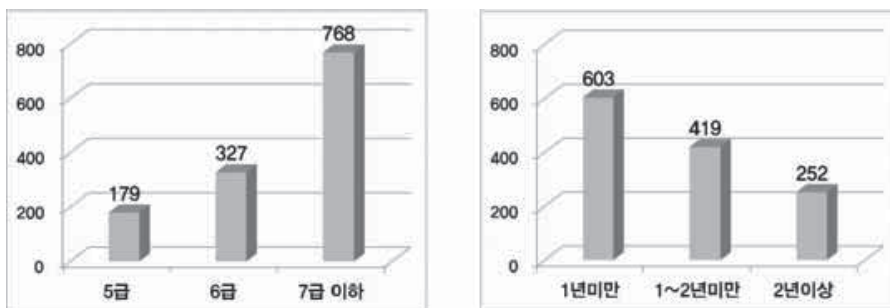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전단,벽보,현수막등
48,505건	28,923건	16,524건	124,994,390건
127,449건			

1.3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인력 및 업무량 현황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총 1,274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직급 및 업무수행 기간 및 1인당업무량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3.1 직급 및 업무 수행기간에 따른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현황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력의 직급은 <그림1.1>과 같이 조사되었으나, 이는 실무담당자 뿐 아니라 옥외광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팀장 및 과장 등 인력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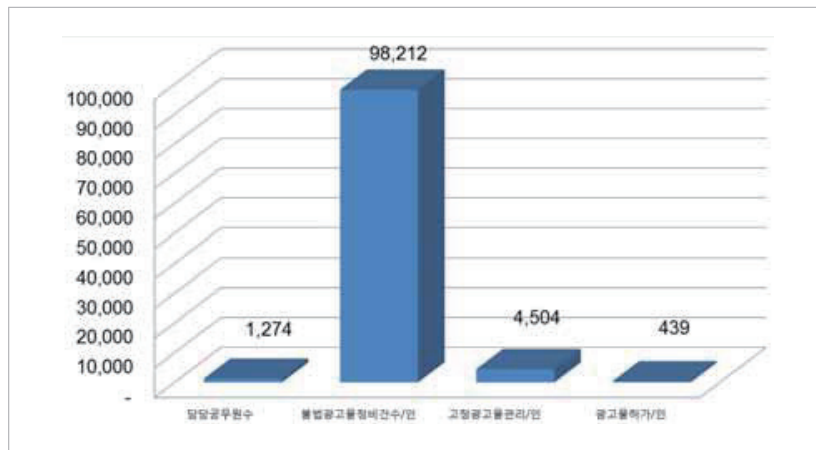
<그림 1.1> 직급 및 업무 수행기간에 따른 공무원 수
(출처 ; 옥외광고 관리현황 자료집, 한국옥외광고센터)

1.3.2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당 업무량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평균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건수는 98,212건/인, 고정광고물 관리 개수는 약 4,500여개/인,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개수는 약 439개/인으로 통계 분석되었다.

이는 공무원 1인이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업무량으로 광고물에 대한 관리, 단속 및 유사시 긴급조치 등 행정력 집행 및 조치가 근본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특히 국내 자영업 여건상 유사업종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업주는 대표적인 영업 홍보수단인 간판에 대한 인·허가, 표시방법의 제한, 단속·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력의 공백은 안전의 문제와 직결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광고물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림 1.2>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1인당 평균 업무량

제2장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

2.1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발생현황

각 지방별로 태풍피해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피해상황	대책
서울시	간판의 접합상태가 미흡하고,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대형 간판이 주를 이루었다.	옥외광고물의 접합부에 대한 설계기준 및 부식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시	대부분의 피해는 간판의 내구성이 다하도록 부식된 접합부의 파손으로 인한 옥외광고물의 이탈이 주를 이루었다.	부식된 접합부는 옥안으로는 안전해 보이나 강풍에 대하여 쉽게 파손되므로, 접합부에 대한 부식의 관리 필요한 실정이다.
대전시	대부분의 피해는 내구성이 다한 접합부의 파손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간판이 파손이 대부분이며, 풍하중을 견디지 못한 앵커부의 파손이 발생한 곳도 발견되었다.	부식 및 잘못된 구조물의 계산으로 인한 파손이 대부분이므로 이외 관련된 안전점검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광주시	대부분의 피해는 오래된 옥외광고물의 부식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 간판의 이탈이 주를 이루었다.	대형 간판의 경우 풍하중을 넓은 면적에 걸쳐 받기 때문에 앵커 및 접합부의 설계에 있어 안전점검기준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한 옥외광고물의 피해 현황으로는 간판 820개, 현수막 지정 게시대 118개, 현수막 2,114개 등의 피해가 있었다.	

2.2 옥외광고물 유형별 안전사고 분석

옥외광고물의 사고발생원인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강풍에 의한 사고 발생이며 사고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절에서는 그간 보고된 총 51개의 옥외광고물의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앵커, 외벽, 접합부 등 옥외광고물의 지지구조와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양호', '보통', '불량'의 3가지 단계로 평가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옥외광고물의 사전안전성 확보 및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종합분석

50여개의 사례를 주요항목별로 분석하여 원인 및 대책을 제시하였다. 전체 항목에서 양호(4.2%), 보통(43.6%), 불량(52.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들 항목 중 불량한 52.2%는 안전성, 내구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취약상태이며 즉각적인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풍에 의한 내력부족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결재의 파괴 또는 유지관리 소

홀로 인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적 예방을 위해 시공시 구조계산을 수행하여 객관적인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점검을 통하여 시공의 적절성으로 확인하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지속적인 내력확보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 미흡 및 불량요인의 원인분석 및 대책

구 분	조사항목	원 인 분 석	대 책
앵커	녹발생	· 유지관리의 소홀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근입깊이	· 시공관리의 소홀 · 구조안전성 검토 미비 · 경험적 시공에 의한 시공오차	구조설계 실시 시공관리 철저
	이격거리	· 시공관리의 소홀 · 구조안전성 검토 미비 · 경험적 시공에 의한 시공오차	구조설계 실시 시공관리 철저
	볼트체결	· 시공관리 및 유지관리의 소홀	시공관리 철저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외벽	변형	· 시공관리 및 유지관리의 소홀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박리	· 시공관리 및 유지관리의 소홀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접합부	변형상태	· 구조안전성 검토 미비	구조설계 실시
	녹발생	· 유지관리의 소홀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2.4 광고물의 파손 유형별 증상 및 대책

광고물의 파손 유형별 증상 9가지에 대한 설명과 대책 및 조치사항을 설명하였다.

- 1 광고물과 건물의 부착상태
- 2 지점부 자재상태 및 광고물의 고정상태
- 3 광고물의 용접 상태
- 4 광고물의 파손
- 5 광고물의 프레임의 배수 및 방수 상태
- 6 광고물에서 배전판 내부까지의 전기배선의 노후와 파손 상태
- 7 광고물 전용 누전 차단기 설치와 작동여부
- 8 조명상태
- 9 광고물 프레임 도장이나 광고면의 시트, 프린팅의 색상 상태

제3장 국내외 옥외광고물 안전 관련 법령 현황분석

이장에서는 국내외 옥외광고물 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한다.

3.1 국내외법령현황

국내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건축법, 건축구조기준 (KBC 2009) 등이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제외하면 적용시설에 대해 "옥외광고물"이라고 직접 지칭하지는 않고 있으나 옥외광고물을 "시설물" 또는 "공작물"로 분류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정되어있고 여러가지 법령에서 산발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과 적용범위 등이 법규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관련 업무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하였다.

법령을 비교한 외국의 경우 옥외광고물의 안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고물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및 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계 시 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광고물이 설치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내 안전점검을 구조전문가에게 받도록 의무화하여 게시기간동안 옥외광고물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3.2 문제점

국내의 경우 규모가 큰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조물 생애주기 동안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제반법규가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작은 규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고 인식하여 안전에 대한 규정과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이 미약하고 그 외의 대부분의 법규에서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제정되어 옥외광고물에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시설물" 또는 "공작물"로 규정된 항목들을 "옥외광고물"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규모에 비해 과도한 안전관리가 되므로 국민 부담이 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량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

옥외광고물과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작은 개체로 구성되어 위험에 대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옥외광고물은

이러한 이유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안전성이 불분명한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은 개수가 제작 설치되어 있어 위험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의 기후 변화에 따른 강풍, 폭설 등의 기상이변이 예상되고 있고, 도시화에 따라 광고물의 개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광고물의 존재는 국민의 안전에 위험한 요소이다. 광고물은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3.3 대책

옥외광고물은 시설물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므로 초기단계, 즉 설계단계에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만 수행하여도 안전사고를 상당량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시설물 기준의 안전관리 규정을 옥외광고물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과도한 규정이 많아 국민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관련공무원의 업무량도 크게 늘어나 불합리하게 되므로 광고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부담증가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대책들은 현재의 안전의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므로 단계별로 강화하여 최종적으로는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1. 허가·신고대상

- 허가·신고대상 일원화
- 허가·신고대상 확대

2. 허가도서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 허가·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하도록 명시
- 일정규모이상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안전확인을 하도록 명시

3. 안전점검 대상

- 안전점검 대상은 광고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 향후 전체 옥외광고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현재는 안전의식도가 낮으므로 단계별로 확대적용 하는 방법을 고려.

4. 안전점검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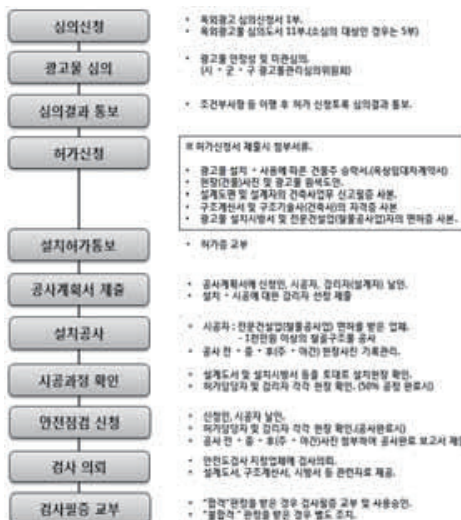
- 옥외광고물 게시기간동안 일정 기간내에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
- 안전점검주기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등화 시행
- 옥외광고물은 시설물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구조이므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한 다면 옥외광고물에 의한 안전사고의 상당부분을 저감시킬 수 있다.

5. 안전점검 수행자 기술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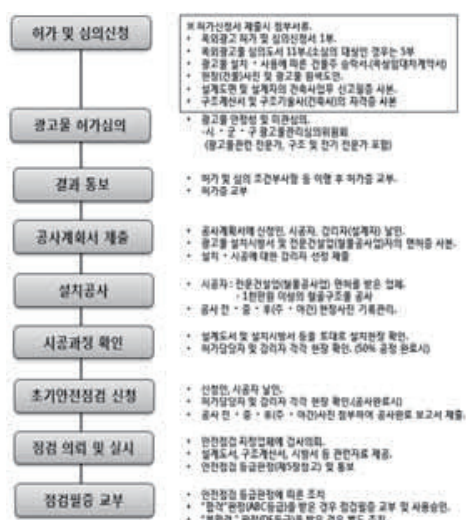
-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 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필요.
- 안전점검 실시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역량확대 방안 마련.
- 안전점검은 구조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갖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
- 안전점검 수행업체의 검사장비에 대한 규정도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

6. 허가 및 심의 절차 개선

- 현재 허가 및 심의 절차는 안전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한 상태
- 신청인은 심의이후 허가절차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어 불편함
- 합리적인 심의와 신청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허가 및 심의 절차를 개선.



<그림 3.1> 현행 허가 및 심의 절차



<그림 3.2>허가 및 심의절차 개선

7. 옥외광고물의 구조안전

- 옥외광고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설계기준, 즉 구조기준이 확립 필요
- 외국의 경우 구조기준(건축구조기준)을 명시하여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
- 현행법에 설계기준(건축구조기준)을 명시하여 설계시 구조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

제4장 옥외광고물 안전체계 확보를 위한 향후과제

현재 국내의 옥외광고물 안전과 관련된 체계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증가되는 옥외광고물의 위험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장에서는 옥외광고물 안전체계 정립을 위해 조속히 확보되어야 할 사항들을 옥외광고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향후과제로 기술한다.

4.1 옥외광고물 관련법의 정비 필요

현재 국내의 옥외광고물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건축구조기준 (KBC 2009) 등에 산재되고 각각의 법규에서 허가·신고, 설계, 안전점검 등 관련사항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법 적용이 복잡하며 각각의 시행령에서도 옥외광고물의 안전에 관련한 부분은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사항들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옥외광고물의 주된 관리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는 안전관련한 조항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시행령에서는 관련 조항들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적절한 안전관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한 조항들은 거의 규정이 없어 일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련 조항들은 사실상 규정이 없거나 부실하여 거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법령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하여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관련 조항을 개선하여 일선에서 진행되는 안전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2 옥외광고물 관리조직 체계 구성

일반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통계 자료를 통한 현황분석, 안전관리 기법개발 등 직접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업무가 필수적이며 안전점검 등의 업무의 신뢰도평가, 기법개발 등 실무적인 업무 지원 등이 필요하다.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위와 같은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업무를 계획, 실행, 관리, 감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광고관련 업무의 전신화가 이루어질 경우 전국적인 통합운용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통합관리를 주관하도록 하여 광고물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운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4.3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매뉴얼 고도화(전산화) 필요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의 개수는 전국적으로 750만~600만개로 추정되며 광고물의 허가·신고 업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등 **관련공무원의 1인당 업무량은 전국 평균 연간 약 10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관련 공무원이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과도한 업무량이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관리 업무는 대부분 수기(手記)에 의해 진행되므로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이루지게 되므로 **과도한 업무량으로 사실상 심도 있는 업무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수작업에 의한 관리 자료는 전체적인 통합 자료로 연계되지 않고 주의해야 할 광고물에 대한 자료 발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통계를 작성하기위해 매년 상당한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고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밀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업무량을 수행 가능한 범위로 최적화하고 작성된 자료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점검 매뉴얼의 적용성을 확대하고 전산장비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산화업무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휴대용기기인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광고주, 점검자, 공무원 등 다자간 입력전산방식을 구축하여 통합관리 한다면 관련공무원 업무량의 대폭 축소가 실현되고 입력된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실시간 통계 및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고 통계자료를 위한 인력·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관련 업무를 민간과 지자체의 업무로 분류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옥상광고물의 업무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4.4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기준 제정

국내의 경우 작은 규모의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고 인식하여 안전에 대한 규정과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에는 안전성이 불분명한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은 개수가 제작 설치되어 있어 위험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의 보편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구조성능, 전기성능 등에 대한 시설기준이 필요하다.

광고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부담증가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시설기준의 제정이 요구된다.

4.5 옥외광고물 게시 표준설계도 개발

옥외광고물은 시설물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므로 초기단계, 즉 설계단계에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만 수행하여도 안전사고를 상당량 감소시킬 수 있으나, **옥외광고물은 규모가 작아 안전성확보를 위한 구조설계, 전기설계 등의 업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영세한 영업장의 경우 부담이 되므로 이를 생략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규모 옥외광고물에 대해 표준설계도를 개발 보급하여 영세한 영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옥외광고물의 표준설계도는 현황조사를 통하여 빈도가 높은 규모를 일반화하여 구조, 전기 설계를 수행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도를 제공하고, 광고주는 제공된 여러가지 표준설계도 중 영업장에 맞는 설계도를 선택하여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므로 설계에 대한 비용부담을 절감하면서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다.

과거 농촌지역의 비닐하우스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고질적인 비닐하우스의 태풍피해를 상당량 저감한 사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표준설계도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비용부담으로 설계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므로서 안전관련 비용부담에 대한 저항을 상당수 줄일 수 있으므로 향후 안전관련 사항이 강화된 법 제정 및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6 옥외광고물 안전교육 체계 개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활동은 안전점검 뿐만아니라 설계, 제작, 시공분야까지 포함될 수 있다. 옥외광고물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적절한 기술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체계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안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한다.

4.7 옥외광고물 보상 공제 체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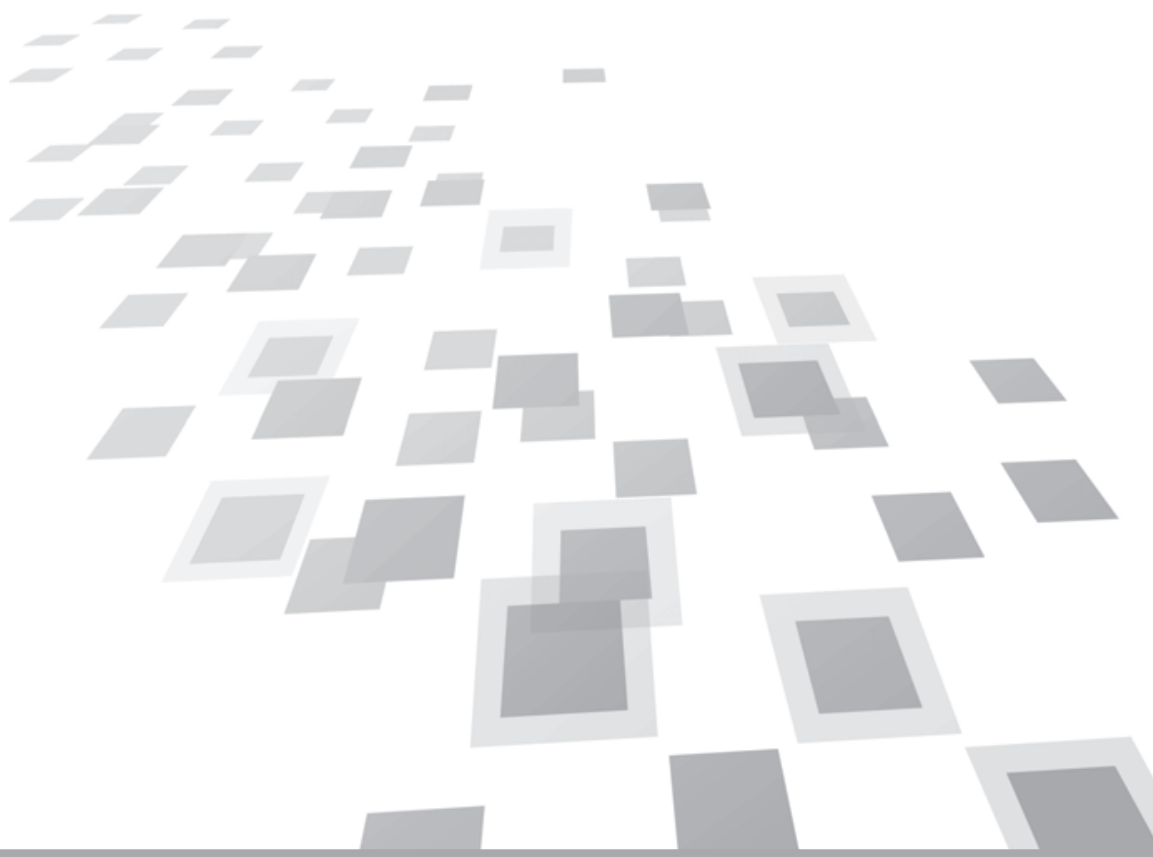
최근에 옥외광고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광고주가 영세하므로 피해보상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피해 보상 공제기금”(가칭) 체제를 구성하여 만일의 사고로 인한 영세 광고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광고주가 “옥외광고물 피해 보상 공제기금”(가칭)에 가입하고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향후 옥외광고물 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이다.

제 Ⅱ 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안)



<목차>

제 II 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안)

제1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안)

1.1 일반사항	21
1.1.1 안전점검 개요	21
1.1.2 옥외광고물의 종류	21
1.1.3 옥외광고물의 안전성 확보	23
1.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행 절차	25
1.2.1 안전점검 기본사항	25
1.2.2 안전점검 계획	28
1.2.3 안전점검 추진	30
1.2.4 안전점검 실시요령	31
1.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결과 조치	34
1.3.1 관리 지정·해제	34
1.3.2 지정·관리 정비결과 보고	35
1.3.3 안전조치 명령 및 통보	35
1.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평가방법	37
1.4.1 체크리스트별 가중치 적용	37
1.4.2 체크리스트별 점수 부여	37
1.4.3 분야별 상태점수 및 등급 (a~e 등급)의 결정	38
1.4.4 종합 『안전등급 (A~E등급)』 결정	38
1.4.5 기 점검한 분야의 준용	38
1.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세부항목 체크리스트	39
1.5.1 관리영역 체크리스트	39
1.5.2 시설영역 체크리스트	40
1.6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별 세부항목 평가기준	42
1.6.1 구조분야	42
1.6.2 전기분야	49
1.7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평가예제	52
1.7.1 안전점검 평가 예제 1	52
1.7.2 안전점검 평가 예제 2	56

제2장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안)

2.1 예방단계 (평상시)	60
2.1.1 간판설치 및 기간 연장 시 안전점검 강화	60
2.1.2 풍수해대비 사전 안전점검 실시	61
2.1.3 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61
2.1.4 간판 정비 및 복구 예산 사전확보	62
2.1.5 경관 및 안전을 고려한 간판 정비사업의 시행	63
2.1.6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정비 강화	64
2.1.7 옥외광고물 관련 기술교육 강화	64
2.2 대비단계 (태풍정보·예비특보 발효시)	66
2.2.1 취약 옥외광고물에 사전조치 강화	66
2.2.2 시민 홍보를 통한 자율정비·신고 활성화	67
2.2.3 옥외광고물 무료 사전점검 홍보 실시	68
2.2.4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 점검	68
2.3 대응단계 (태풍주의보 발효시)	70
2.3.1 옥외광고물 파손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70
2.3.2 파손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	70
2.3.3 간판 및 인명·재산피해 상황보고	71
2.4 복구단계 (특보 해제시)	72
2.4.1 미복구 간판에 대한 조치	72
2.4.2 최종 피해상황 파악보고	72

제1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안)

1.1 일반사항

1.1.1 안전점검 개요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은 옥외광고물이 존치되는 동안 목적인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자중, 바람 등 옥외광고물에 작용하는 외력을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시공 되었는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고 옥외광고물의 존치기간 동안 성능을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설계·제작 및 시공, 안전점검, 유지보수가 안전점검의 중요한 3요소이다. 모든 옥외광고물은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강풍 뿐 아니라 열, 수분, 자외선 등의 영향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열화 (내부적인 영향에 따라 화학적 및 물리적 성질이 나빠지는 현상)되어 성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의 구조적인 안전성능이 확보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제작 시에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며, 때에 따라서는 불가할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옥외광고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근본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어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전점검은 옥외광고물의 존치기간 동안 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설치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매뉴얼의 목적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업무흐름과 실무요령을 기술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한 옥외광고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1.1.2 옥외광고물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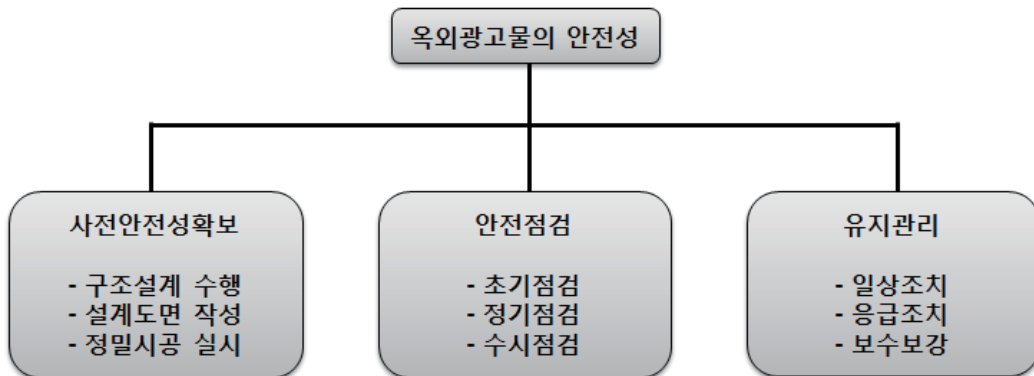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등이 있다.

<표 1.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종류

가로형 간판		애드 벌룬	
세로형 간판		벽보	
돌출 간판		전단지	
공연 간판		선전탑	
옥상 간판		아치 광고물	
지주 이용 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 시설 이용 광고물	
현수막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	

1.1.3 옥외광고물의 안전성 확보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림 1.1>과 같이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안전성확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그리고 발생된 결함을 조치하는 유지관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1> 옥외광고물의 안전성 확보

1) 사전안전성 확보

옥외광고물은 일종의 공작물로 자연재해 중 강풍에 취약하고, 파손·추락 등의 사고발생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인명 및 재산상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모든 옥외광고물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환경에 따른 외력(자중 및 풍압력)이 작용하므로 이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구조설계를 수행하여 옥외광고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한 부재와 부착방식 등을 결정하고 이를 도면에 반영하여 정밀한 시공이 이루어지면 사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만 허가 또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인력 부족과 법령이 미비하여 사전안전성확보 활동이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소규모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설치 시에는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사전에 확인하여 적절한 안전성을 갖는 옥외광고물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정이며, 따라서 광고주, 제작자는 구조설계를 반드시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은 법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계도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안전성확보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하다.

2) 안전점검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은 옥외광고물의 존치기간동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성능을 확인 하는 것으로 초기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점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옥외광고물 설치완료 시점 또는 게시위치 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실시한다.

정기점검은 옥외광고물의 게시기간 연장, 유지관리 및 게시기간 내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검사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주기를 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수시점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거, 해빙기, 풍수해대비, 지자체의 장(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 수시로 실시한다.

3) 유지관리

옥외광고물의 유지관리 활동은 일상조치, 응급조치, 보수보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상조치는 옥외광고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자의 육안관측을 통한 결함여부를 확인하는 일상점검, 소모품 교환 및 청소 등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다.

응급조치는 옥외광고물의 관리자가 스스로 조치할 수 없을 경우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때 까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조치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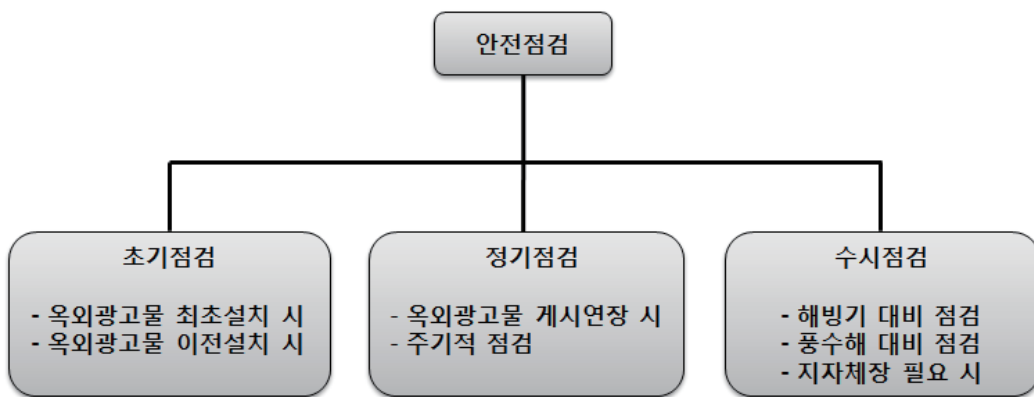
보수보강은 일상점검, 정기전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발견된 결함을 전문가를 통하여 보수하거나 보강하여 옥외광고물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1.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행 절차

1.2.1 안전점검 기본사항

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종류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은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표 1.3>에 제시된 안전점검 시기에 따라 실시한다.



<그림 1.2> 안전점검의 종류

○ 초기점검

초기점검은 별도의 주기 없이 옥외광고물의 최초 설치 시 및 이전 설치 시 등 옥외광고물이 새로 게시되거나 위치 이동 발생 시에 실시한다.

○ 정기점검

옥외광고물 게시기간 연장 시 또는 외부환경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외부환경에 따른 점검주기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곳은 2년 1회, 염해 및 강풍 등에 의한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곳, 즉 해안가 또는 광활 지역 등 강풍이 예상되는 곳은 1년 1회 점검을 실시한다.

○ 수시점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안전점검 세부계획 수립하여 추진한다.

-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광고물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

- 거나 이와 유사한 옥외광고물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표 1.2>에서 제시된 옥외광고물 계절별 중점점검계획에 따라 실시

<표 1.2> 옥외광고물 계절별 중점점검계획

계절별	중점점검 대상광고물	비고
해빙기 대비 (2~3월)	- 지주형 옥외광고물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상황에 따라 점검 대상의 추가 또는 변경 시행 가능
풍수해 대비 (5~6월)	- 옥외광고물 전체	

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기

- <표 1.3> 안전점검 시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점검 평가등급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별화하여 실시한다.
- 타 법령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수시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월별·계절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중복점검을 배제하기 위해 정기 안전점검으로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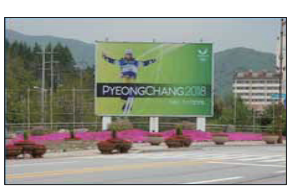
<표 1.3> 안전점검 시기

구분	내용															
초기점검	- 옥외광고물 최초게시 - 위치 및 장소를 변경할 경우 - 옥외광고물 규격, 사용자재를 변경할 경우															
정기점검	- 옥외광고물 게시기간 연장 시 - 주기적 점검 <table><tr><td>일반적인 곳</td><td>2년 1회</td></tr><tr><td>염해 및 강풍 등에 의한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곳</td><td>1년 1회</td></tr></table>			일반적인 곳	2년 1회	염해 및 강풍 등에 의한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곳	1년 1회									
일반적인 곳	2년 1회															
염해 및 강풍 등에 의한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곳	1년 1회															
수시점검	-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점검 평가등급에 따른 점검주기	- 안전점검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기로 점검을 실시한다. <table><tr><th colspan="2">광고물 등급</th><th>점검주기</th></tr><tr><td rowspan="2">중점관리광고물</td><td>A, B 등급</td><td>2년 1회 이상</td></tr><tr><td>C 등급</td><td>1년 1회 이상</td></tr><tr><td rowspan="2">재난위험광고물</td><td>D 등급</td><td>보수 후 재점검</td></tr><tr><td>E 등급</td><td>해체 또는 보수 후 재점검</td></tr></table>			광고물 등급		점검주기	중점관리광고물	A, B 등급	2년 1회 이상	C 등급	1년 1회 이상	재난위험광고물	D 등급	보수 후 재점검	E 등급	해체 또는 보수 후 재점검
광고물 등급		점검주기														
중점관리광고물	A, B 등급	2년 1회 이상														
	C 등급	1년 1회 이상														
재난위험광고물	D 등급	보수 후 재점검														
	E 등급	해체 또는 보수 후 재점검														
중복점검 방지	- 타 법령에 의한 점검 실시한 경우 중복점검을 배제하기 위해 정기 안전점검으로 인정한다.															

3) 안전점검 대상

-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대상 범위는 <표 1.4>에 제시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직접 관리하는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
- <표 1.4>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범위 외 옥외광고물이라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광고물은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표 1.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구분	형태	대상 범위
가로형 간판	 -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 벽면에 가로 또는 세로로 길게 표시	한 변의 길이 5m 이상
돌출 간판	 - 판류형 간판, 이용·미용업소 표지 등을 건물 벽면에 수직으로 튀어나오게 표시	광고판의 넓이 1m ² 이상
옥상 간판	 - 건물옥상에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표시 - 건물 옥상구조물(승강기탑, 옥탑등)에 직접 표시	전부
지주이용 간판	 -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부착 -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 - 군사시설, 철도, 공사현장 차폐를 위한 시설물에 표시	높이 2m 이상 또는 광고판의 넓이 1m ² 이상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표시하여 건물옥상, 지면, 공중에 띄우는 옥외광고물	전부

1.2.2 안전점검 계획

안전점검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점검계획을 정밀하게 수립 하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계획 등을 수립한다. 안전점검에는 외관 및 안전 취약부 위 점검 등이 포함되며, 안전사고 예방과 옥외광고물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연간계획, 월간계획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한다. 특히 법규에서 의무화시킨 점검 등은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에 포함 시켜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위해 요소 또는, 옥외광고물의 기능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변형, 부식, 열화 등 결함을 조 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1.3>에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흐름도로 표시하였다.

1) 안전점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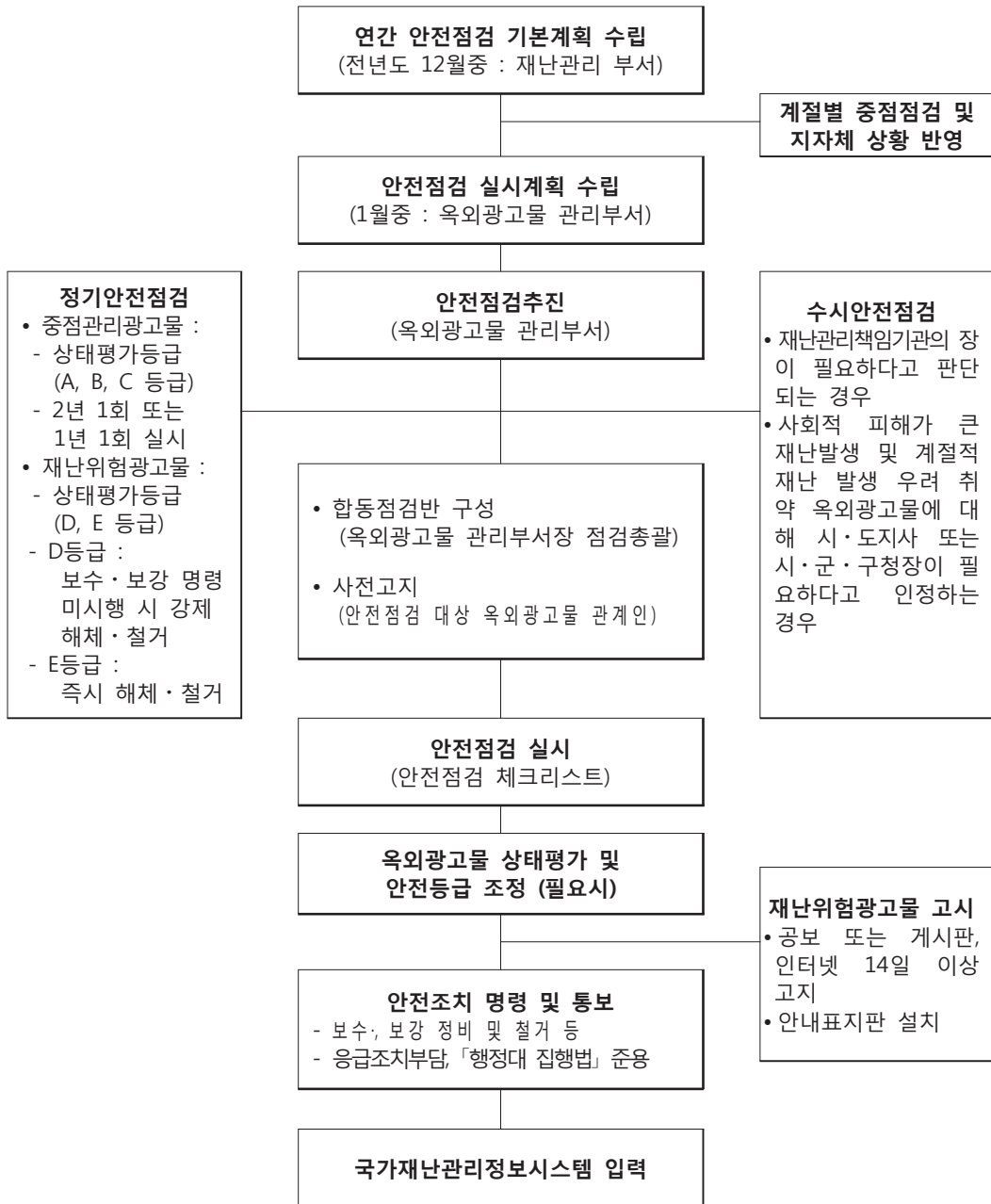
- 재난관리부서에서 연간 안전점검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 12월중)
 - ※ 기본계획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점검대상 옥외광고물 관리부서를 반드시 해당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책임을 명확히 구분
-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에서 1월중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 실시
 - ※ 옥외광고물 관리부서란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임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법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지도·감독, 인·허가·신고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관리부서로 지정]
-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중복점검 폐해방지
 - ※ 점검 실시 중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당초 점검대상 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횟수가 초과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단,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실시의 경우는 예외

2) 안전점검 계획시 고려사항

옥외광고물 설치 후 관리자 (광고주, 지자체)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적절히 점검을 시행하며, 점검계획을 수립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 안전점검의 종류, 범위, 항목, 방법 및 장비
- 대상물의 설계자료, 과거이력(점검 및 사고이력, 열화실태, 보수·보강실태 등)파악
- 옥외광고물의 용도를 고려한 문제점 및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문제점파악

- 옥외광고물의 규모 및 점검의 난이도
- 점검표의 작성



<그림 1.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계획 및 실행 흐름도

1.2.3 안전점검 추진

1) 안전점검 주관

- 시·도 : 시·군·구 소관 옥외광고물 외 전반, 기초자치단체 소관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본점검, 긴급안전점검 등
- 시·군·구 : 소관관리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2) 안전점검 수행자 자격기준

- 안전점검의 판단결과는 옥외광고물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공학적인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안전점검 업무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한다.
- 위탁계약 전문기관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관한 기술능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업무 위탁계약 전문기관 선정 시 <표 1.5>의 안전점검 수행자 자격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표 1.5> 안전점검 수행자 자격기준(안)

구분	내용
안전점검 수행자 자격기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기관(자) 중 국가공인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건축구조기술사 ② 건축구조기술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④ 건축, 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 취득한 사업자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점검반 구성

-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장 (과장급 이상)이 점검을 총괄하며
- 건축·전기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해당 직렬공무원으로 편성하되
- 전기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민간단체·협회, 민간안전관리자문단 등의 협조를 받아 합동점검반 구성
- 시기별 취약 옥외광고물에 대한 합동점검반 편성
 - 중복·과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시기별로 점검대상 시설의 특성에 따라 합

동점검 주관부서를 선정, 합동점검반 편성 추진

<표 1.6> 옥외광고물 합동점검반 편성 요령

시기별 안전점검	합동점검반 편성 요령	비고
해빙기 안전점검	재난관리부서에서 주관	
풍수해 대비 점검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기점검으로 재난관리부서에서 주관	
옥외광고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재난관리부서에서 총괄,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에서 주관	

4) 사전고지

-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의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등의 목적, 날짜, 점검기관, 점검원 등을 서면으로 사전통지
 - ※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관계인의 입회 및 안내를 받아 점검 실시 한다.

1.2.4 안전점검 실시요령

1) 안전점검 방법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항목들을 평가기준에 따라 조사한다.

※ 참조 : 1.5절 세부항목 체크리스트

1.6절 안전점검 분야별 세부항목 평가기준

- 안전점검은 관리영역과 시설영역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 참조 : <표 1.13> 관리영역 체크리스트

<표 1.14> 시설영역 구조분야 체크리스트

<표 1.15> 시설영역 전기분야 체크리스트

○ 평가방법

- 안전점검 조사결과를 근거로 1.4절에 제시된 안전점검 평가 방법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에 따라 상태등급(A~E등급) 결정

※ 참조 : 1.4절 안전점검 평가방법 및 1.7절 안전점검 평가예제

- 결정된 상태등급에 따라 “중점관리광고물” 및 “재난위험광고물”로 지정
“중점관리광고물” => 상태등급 A, B, C 등급
“재난위험광고물” => 상태등급 D, E 등급

○ **평가결과 조치방법**

- 안전점검에 의해 확인된 결함사항을 보수하도록 조치
- 결정된 상태등급 및 관리지정등급에 따른 조치
※ 참조 : 1.3절 안전점검 결과조치

2) 주요 점검사항

-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및 옥외광고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및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실시내용 파악
-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이력카드 비치 여부 검사

3) 옥외광고물 상태등급 및 관리등급 지정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손상·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난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지정 또는 조정 한다. <표 1.7>은 안전점검 결과를 근거로 옥외광고물 안전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태등급을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중점관리광고물 및 재난위험광고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 **중점관리광고물 ⇒ A, B, C 등급**

비교적 건전한 옥외광고물로서, 이상 부위가 발생하면 보수의 필요성을 판단, 조치한다. 보수가 요구되는 옥외광고물의 관리자는 일정기간 내에 보수하도록 하고 보수 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 **재난위험광고물 ⇒ D, E 등급**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제한 및 철거해체를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옥외광고물로서,

D 등급은 안전성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단계의 옥외광고물로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므로 즉각적인 보수가 실시되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보수여부를 확인하고, 보수 후 안전점검을 통하여 등급 재조정을 하여 옥외광고물이 정상적인 상태가 유

지되도록 한다. 일정 계도기간 동안 긴급보수 미 이행 시는 해체·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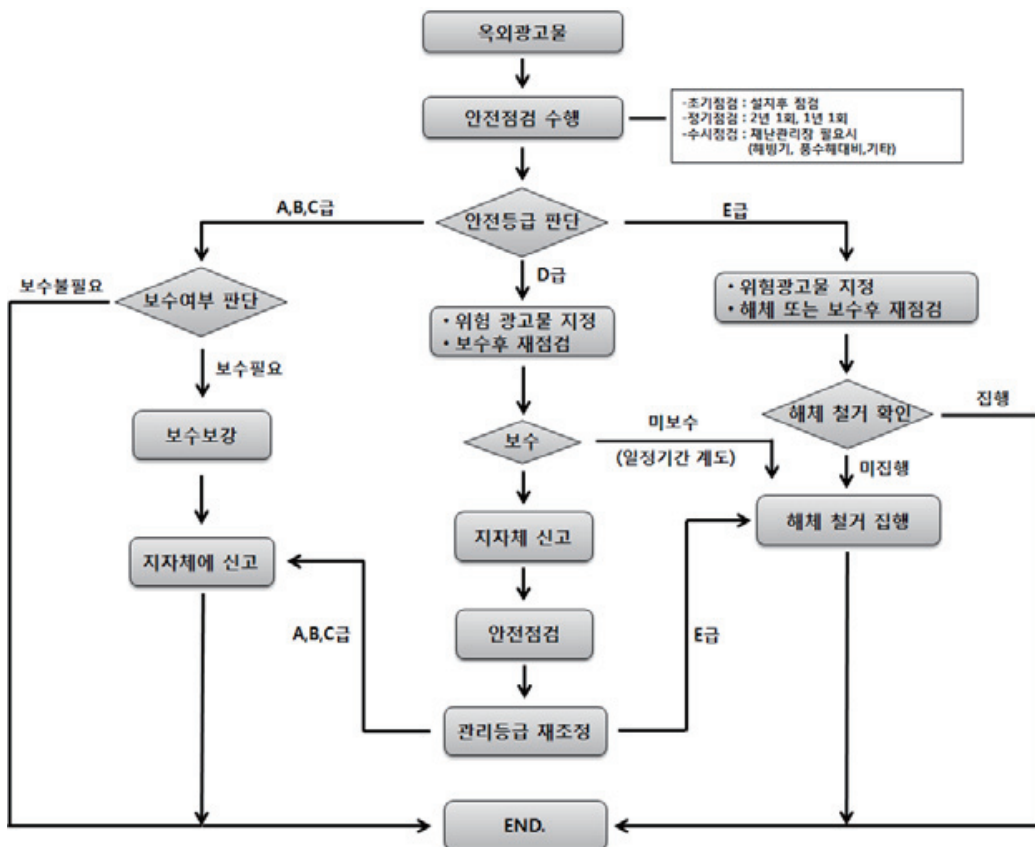
E 등급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단계로서, 즉시 해체철거가 요구되는 옥외광고물이다. 따라서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해체 철거를 명령하고, 미 이행 시에는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위험광고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 1.7> 옥외광고물 안전등급 평가기준

관리 등급	상태 등급	상태	평가(조치)기준
중 점 관 리 광 고 물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 점검이 필요 ⇒ 안전광고물	○ 이상이 없는 옥외광고물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옥외광고물
	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수·보강 필요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대상으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옥외광고물
재 난 위 험 광 고 물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부재의 균열, 지지부 탈락 결함, 침하 등)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즉시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기능상실 및 재난 우려가 있는 옥외광고물 ○ 사용제한 및 보수·보강 등의 명령 후 미이행 시 강제 해체·철거 조치가 필요한 옥외광고물
	E등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철거 판단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노친 옥외광고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판단되는 옥외광고물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제한 및 즉시 강제 해체·철거 명령이 필요한 옥외광고물

1.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결과조치

평상시에 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수행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상태등급 및 관리지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을 수행한다. 안전조치 사항에는 안전점검을 포함한 보수·보강 등 정비를 통해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하기 위해 취해지는 법적절차와 그 결과를 기록 및 통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조치 절차는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결과조치 절차

1.3.1 관리 지정 · 해제

- 안전점검 실시 후 <표 1.7>의 옥외광고물 상태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광고물” 및 “재난위험광고물”로 관리등급 지정

- 중점관리광고물 또는 재난위험광고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이하 “관계인”)에게 지정 및 해제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옥외광고물 보수·보강 등을 수행하고 재점검을 통한 평가 등급이 조정 변경되어 위험성이 해소되면 해소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제 또는 등급변경 조치
- 게시기간 만료, 폐업 등 해제사유 발생 시 확인절차를 거쳐 옥외광고물에서 해제
- 옥외광고물 지정·해제·등급조정 등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은 반드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즉시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재난위험광고물 고시**
 - 재난위험광고물 지정 시 내용 및 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재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재난위험광고물 지정 안내표지판은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처번호 등 지정내용을 포함하여 설치

1.3.2 지정·관리 정비결과 보고

- 옥외광고물 지정에 따른 등급 조정 등 관리현황과 위험해소 등 정비결과를 지자 체장에게 보고
- 지자체장은 보고 받은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정조치나 보완요구

1.3.3 안전조치 명령 및 통보

-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에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 옥외광고물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명하고 반드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기록·관리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등 필히 병행)하고, 해당관리부서에 통보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조치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옥외광고물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 보수·보강 등 정비명령과 재난발생 위험요인의 제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행정대 집행법을 준용하여 강제안전조치

<표 1.8>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중점관리광고물	재난위험광고물
관 리 책 임 자	정	▪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담당과장급	▪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담당국장급 (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급)
	부	▪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담당자급	▪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담당과장급 (과장이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
	의무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주관 실시 ▪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금지 등 옥외광고물 상태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및 통보 ▪ 위험요소 진행상황 등 관련기록 유지관리 ▪ 재난위험광고물 해소 장·단기계획 수립·추진	
안 전 조 치	공통 사항	▪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 관계인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시	
	공공	▪ 공공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 긴급 보수·보강 조치	▪ 공공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 긴급 보수·보강 (D등급) 및 해체·철거 (E등급) 조치
	민간	민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토록 지도	▪ 민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즉시 보수·보강 (D등급) 및 해체·철거 (E등급) 조치 명령 후 기간 내 미이행 시 강제 철거조치
안전점검 시기		▪ <표 1.4> 안전점검 주기참조 ※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정기점검 주기 완화	
등급지정 및 조정		▪ 안전등급 결정방법(1.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방법)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 재분류	

1.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평가방법

1.4.1 체크리스트별 가중치 적용

- 영역별로 관리영역 30%, 시설영역 70%로 나누어 가중치 적용
- 관리영역 가중치(30%) 적용방법
 - 공통분야 15%와 개별분야 15%로 나누어 가중치적용
- 시설영역 가중치(70%) 적용방법
 - 구조분야 가중치 : 56% (시설영역 가중치의 80%)
 - 전기분야 가중치 : 14% (시설영역 가중치의 20%)

<표 1.9> 분야별 관리·시설영역의 가중치 기준

영역	분야	분야별 가중치(%)	영역별 가중치(%)
관리영역	공통분야	15%	30%
	개별분야	15%	
시설영역	구조분야	56%	70%
	전기분야	14%	
합계		100%	100%

1.4.2 체크리스트별 점수 부여

- 평가결과에 따라 양호 10점, 보통 7점, 불량 0점 부여

<표 1.10> 분야별 상태구분 및 점수부여 기준

		평가결과		
		양호	보통	불량
관리영역	공통분야	10점	7점	0점
	개별분야	10점	7점	0점
시설영역	구조분야	10점	7점	0점
	전기분야	10점		0점

1.4.3 분야별 상태점수 및 등급 (a~e 등급)의 결정

- 분야별 상태점수, 절대평가 방식으로 점수 범위 제시
- 분야별 상태점수 산정방법

$$\text{분야별 상태점수} = \text{평가점수} / \text{평가항목수}$$
- ※ 평가항목수 = 평가에 사용된 항목 개수("해당없음" 항목 개수 제외)

<표 1.11> 분야별 상태등급 절대평가 기준

상태등급	a	b	c	d	e
점수범위	100~90점	90점미만~75점	75점미만~60점	60점미만~50점	50점미만

1.4.4 종합 『안전등급 (A~E등급)』 결정

- 전체 상태점수와 가중치를 적용, 안전등급 점수 범위 제시
- 종합 안전점수 산정방법 : $\text{종합 안전점수} = \text{분야별 평가점수} \times \text{분야별 가중치}$
- 관리영역의 분야별 조사항목 중 "불량"으로 판정된 항목이 있는 경우는 분야별 상태등급을 "d" 또는 "e"등급으로 판정하며, 서류의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시설영역의 분야별 조사항목 중 "불량"으로 판정된 항목이 있는 경우는 분야별 상태등급을 "d"등급으로 판정하고 보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설영역의 분야별 상태등급 중 하나의 분야에서라도 "d" 또는 "e"등급의 판정을 받게 되면 종합 안전등급 또한 "D" 또는 "E"로 등급을 결정한다.
- 시설에 심각한 손상(전단균열, 좌굴, 파손 등) 또는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고 해당분야 상태점수를 가·감점하여 안전등급을 조정 하여야 한다.

<표 1.12> 안전등급 절대평가 기준

안전등급	A	B	C	D	E
점수범위	100~90점	90점미만~75점	75점미만~60점	60점미만~50점	50점미만

1.4.5 기 점검한 분야의 준용

- 6개월 이내에 각각의 법령에 의거 해당분야 (구조, 전기) 안전점검을 기 실시한 경

우 이를 확인·명시하고 1회에 한하여 준용 가능

※ 점검 후 해당분야에 시설분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는 준용 불가

1.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세부항목 체크리스트

1.5.1 관리영역 체크리스트

<표 1.13> 관리영역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 없음
공통분야	1. 이력카드의 구비 및 기록여부				
	2. 비상연락망 구비여부				
개별분야	1. 구조설계도서의 구비여부				
	2. 전기설계도서의 구비여부				

□ 관리영역의 공통분야

- 1) 이력카드는 옥외광고물 관리대장과 각 분야의 안전점검 기록 카드를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비상연락망은 옥외광고물 관리자, 119소방대, 관할파출소, 관할동사무소 등 명칭과 연락방법을 기록

□ 관리 영역의 개별분야

- 1) 설계도서는 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중 2개 이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보통', 그 이상 누락된 경우는 '불량'으로 판정함
 - ① 구조분야의 경우 설계도서외에 구조 계산서를 비치하도록 하며 이중 1개 이상 미비치 시 '보통', 모두 없으면 '불량'으로 간주함
 - ② 전기분야는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를 모두 비치하도록 하며 적용기준은 위와 동일함

1.5.2 시설영역 체크리스트

<표 1.14> 시설영역 구조분야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 없음
구조 분야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 일치여부	1. 주요부재의 부재치수 확인				
		2. 지지구조의 접합 방법 확인				
		3. 앵커볼트의 치수 및 위치 확인				
	지지구조물 상태평가	4. 옥외광고물의 흔들림 여부 확인				
		5. 지지구조물의 콘크리트 상태평가				
	주요부재 상태평가	6. 주요부재의 부식에 대한 상태평가				
		7. 볼트 접합부의 상태평가				
		8. 용접 접합부의 상태평가				
		9. 옥외광고물 외장재 변형에 의한 상태평가				
		10. 브라켓과 옥외광고물 연결부위의 고정상태 확인				
		11. 지지구조 상태 확인				
		12. 하부구조물의 방수처리 상태				
	지주이용간판	13. 지주 기초 주변 바닥 변형상태 확인 (전도유무)				
	통행안전에 대한 상태평가	14.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15.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소계						

<표 1.15> 시설영역 전기분야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항목	평가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전기 분야	전선 상태	1.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2. 노출전선의 피복손상 여부			
	배선 상태 (옥내, 옥외, 옥상 배선 포함)	3. 노출배선의 적합 여부			
		4. 배선 분기상태의 적합 여부			
		5. 배선 절연상태의 적합 여부			
	차단기 상태	6. 차단기의 적합 여부			
		7. 차단기 작동상태의 적합 여부			
	관등시설 상태	8. 관등배선 상태의 적합 여부			
		9. 방전등용 안정기의 적합 여부			
		10. 방수상태의 적합 여부			
	접지 및 피뢰설비 상태	11. 접지상태의 적합 여부			
		12. 피뢰설비의 적합 여부			
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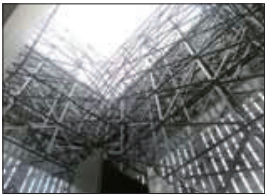
1.6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별 세부항목 평가기준

1.6.1 구조분야

평가항목		주요부재의 부재치수 확인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 방법	양호	설계도서와 부재치수가 일치하는 상태
	보통	설계도서의 부재 단면적에 90% 이상인 상태
	불량	설계도서의 부재 단면적에 90% 미만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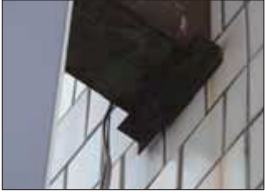
평가항목		지지구조의 접합 방법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 방법	양호	설계도서에 명기된 지지구조체 및 지지방식의 일치
	보통	설계도서에 명기된 지지구조체 일치하고 지지방식의 불일치
	불량	설계도서에 명기된 지지구조체와 지지방식의 불일치

※ 지지방식 : 옥외광고물과 지지구조체 사이 접합 방식

평가항목		앵커볼트의 치수 및 위치 확인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 방법	양호		설계도서와 일치
	보통		설계도서와 일치율 95% 이상
	불량		설계도서와 일치율 95% 미만

평가항목		옥외광고물의 흔들림 여부 확인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 방법	양호	흔들림이 없는 상태
	보통	옥외광고물은 흔들림이 있으나, 앵커볼트 및 브라켓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
	불량	옥외광고물 전체(앵커볼트 및 브라켓 포함)의 흔들림이 있는 상태

평가항목		지지구조물의 콘크리트 상태평가기준	
평가 방법	양호		균열이 없고 콘크리트 구조체가 양호한 상태
	보통		폭 0.7mm 미만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박리 및 박락이 없는 상태
	불량		폭 0.7m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박리 및 박락이 있는 상태

평가항목		주요부재의 부식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 방법	양호		부식이 없으며, 모든 부위에 도장이 되어 있는 상태
	보통		일부 표면부식이 발생되고, 도장이 일부 박락된 상태
	불량		부식으로 인해 부재의 단면결손이나 녹의 들뜸이 일어난 상태

평가항목		볼트 접합부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 방법	양호		풀림이나 이완이 없는 상태
	보통		볼트 개수의 1/4이하 풀림이나 이완이 있거나, 볼트에 표면부식이 일어난 상태
	불량		볼트 개수의 1/4초과 풀림이나 이완이 있거나, 볼트에 부식으로 인한 단면결손 및 녹의 들뜸이 일어난 상태

평가항목		용접 접합부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 방법	양호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보통		부분적으로 결함이 발생되거나 용접부에 표면부식이 발생한 상태
	불량		광범위하게 결함이 발생되거나 용접부에 부식으로 인한 단면결손 및 녹의 들뜸이 일어난 상태

평가항목		광고물외장재 변형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 방법	양호		외장재 뒤틀림 및 기타 변형이 없는 상태
	보통		외장재 뒤틀림이 없으나 도색이 변색된 상태
	불량		외장재 뒤틀림이 발생하였으며, 도색이 변색된 상태

평가항목		브라켓과 옥외광고물의 연결부위 고정상태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 방법	양호		브라켓과 옥외광고물의 연결부위가 일체화되거나 이상이 없는 상태
	보통		브라켓과 옥외광고물의 연결부위에 이격이 발생된 상태
	불량		브라켓과 옥외광고물의 연결부위가 탈락된 상태

평가항목		지지구조 상태평가기준	
평가 방법	양호		지지구조체 주요구조물에 지지된 경우 (콘크리트, 철골 등)
	보통		마감재를 지지하는 구조물에 지지된 경우 (조적조, 철골 띠장재 등)
	불량		마감재에 지지된 경우

평가항목		옥상간판 하부구조물의 방수처리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 방법	양호		하부구조물의 방수 처리가 잘 이루어진 상태
	보통		하부구조물과 옥상간판 지주사이 방수층의 들뜸이 있는 상태
	불량		옥상간판이 설치된 하부에 누수가 발생한 상태

평가항목		지주이용간판의 지주 기초 주변 바닥 변형 상태평가기준	
평가 방법	양호		지주 기초 주변의 변형이 없는 경우
	보통		지주 기초 주변에 균열 및 토사의 이동 흔적이 있는 경우
	불량		지주 기초 주변에 공극이 발생되었거나 지주가 기울어진 경우

평가항목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 방법	양호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
	보통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통행에 다소 불편을 주는 상태
	불량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이거나, 비상구의 통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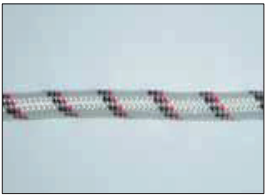
평가항목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 방법	양호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
	보통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통행에 다소 불편을 주는 상태
	불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

1.6.2 전기분야

평가항목		규격 전선의 사용여부
평가 방법	양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케이블 등의 한국 산업표준(KS)에 적합한 규격전선을 사용한 경우
	불량	비닐코드선 등 옥외간판에 적합하지 않은 전선을 사용한 경우

평가항목		노출전선의 피복손상 여부
평가 방법	양호	 노출 전선의 외관 검사시 피복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불량	 노출 전선의 외관 검사시 피복 손상이 발견된 경우

평가항목		노출배선의 적합여부
평가 방법	양호	보행로 등에 노출되는 배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몰드 등으로 피복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한 경우
	불량	보행로 등에 노출되는 배선에 케이블이 아닌 전선을 사용하거나, 케이블을 사용하였더라도 몰드 등으로 피복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평가항목		배선 분기상태의 적합 여부	
평가 방법	양호		옥외광고물 전용의 차단기(배선용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에 연결된 전용회로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다른 부하회로와 분기하거나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량		옥외광고물 전용의 회로를 사용하지 않거나, 멀티콘센트에 여러 개의 부하와 함께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평가항목		배선 절연상태의 적합 여부	
평가 방법	양호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절연저항 값을 만족하는 경우	
	불량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절연저항 값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평가항목		차단기의 적합 여부	
평가 방법	양호		옥외광고물 회로의 차단기로 배선용차단기나 누전차단기를 사용한 경우
	불량		옥외광고물 회로에 배선용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 이외의 스위치나 회로개폐기를 사용한 경우

평가항목		차단기 작동상태의 적합 여부
평가 방법	양호	차단기의 개폐 상태 및 누전차단 시험작동 상태가 양호한 경우
	불량	차단기의 개폐 상태 및 누전차단 시험작동 상태가 불량한 경우

평가항목		관등배선 상태의 적합 여부
평가 방법	양호	관등에 연결되는 배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전선인입부에 피복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불량	관등배선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거나 전선인입부에 피복 손상이 발견된 경우

평가항목		방전등용 안정기의 적합여부
평가 방법	양호	가연성 조영재로부터 1 cm 이상 이격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된 경우
	불량	가연성 조영재로부터 1 cm 이상 이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지 않았거나, 쉽게 점검할 수 없도록 시설된 경우

평가항목		방수상태의 적합 여부
평가 방법	양호	관등, 안정기 및 배선 등의 시설이 우수에 직접 노출되거나 침수될 우려가 없는 경우
	불량	관등, 안정기 및 배선 등의 시설이 우수에 직접 노출되거나 침수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		접지상태의 적합 여부
평가 방법	양호	옥외광고물의 비통전 금속체 부분에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접지저항값을 만족하는 접지공사를 실시한 경우
	불량	차단기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의 비통전 금속체 부분에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접지저항값을 만족하는 접지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항목		피뢰설비의 적합 여부
평가 방법	양호	설계도서에 명기된 장소에 명기된 수량에 설치된 경우
	불량	설치된 장소와 수량이 설계도서에 명기된 장소 및 수량과 다른 경우

1.7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평가예제

1.7.1 안전점검 평가 예제 1

1) 관리영역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예

<표 1.16> 예제 1 관리영역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			
		양호	보통	불량	해당 없음	양호	보통	불량	해당 없음
공통분야	1. 이력카드 구비 및 기록여부			○				0	
	2. 비상연락망 구비여부		○				7		
소계		7				0	7	0	
개별분야	1. 구조설계도서의 구비여부			○				0	
	2. 전기설계도서의 구비여부	○				10			
소계		10				10	0	0	

2) 시설영역 평가결과 예

<표 1.17> 예제 1 시설영역 구조분야 평가결과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결과				평가 점수			
		양호	보통	불량	해당 없음	양호	보통	불량	해당 없음
구조 분야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 일치여부	1. 주요부재의 부재치수 확인	○			10			
		2. 지지구조의 접합 방법 확인	○			10			
		3. 앵커볼트의 치수 및 위치 확인	○			10			
	지지구조물 상태평가	4. 옥외광고물의 흔들림 여부 확인		○			7		
		5. 지지구조물의 콘크리트 상태평가	○			10			
	주요부재 상태평가	6. 주요부재의 부식에 대한 상태평가		○			7		
		7. 볼트 접합부의 상태평가	○			10			
		8. 용접 접합부의 상태평가	○			10			
		9. 옥외광고물 외장재 변형에 의한 상태평가	○			10			

		10. 브라켓과 옥외광고물 연결부위의 고정상태 확인			○			0		
		11. 지지구조 상태 확인			✓				✓	
		12. 하부구조물의 방수처리 상태			✓				✓	
	지주이용 간판	13. 지주 기초 주변 바닥 변형상태 확인 (전도유무)			✓				✓	
	통행안전 상태평가	14.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10	0	0	
		15.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10	0	0	
소계			104/120			90	14	0		

<표 1.18> 예제 1 시설영역 전기분야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전기 분야	전선 상태	1.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			10		
		2. 노출전선의 피복손상 여부	○			10		
	배선 상태	3. 노출배선의 적합 여부	○			10		
		4. 배선 분기상태의 적합 여부	○			10		
		5. 배선 절연상태의 적합 여부	○			10		
	차단기 상태	6. 차단기의 적합 여부	○			10		
		7. 차단기 작동상태의 적합 여부	○			10		
	관등시설 상태	8. 관등배선 상태의 적합 여부		○			0	
		9. 방전등용 안정기의 적합 여부	○			10		
		10. 방수상태의 적합 여부	○			10		
	접지 및 피뢰설비 상태	11. 접지상태의 적합 여부	○			10		
		12. 피뢰설비의 적합 여부			✓			✓
소계			100/110			100	0	

3) 분야별 상태점수 및 등급 산정

○ 분야별 상태점수 산정방법

분야별 상태점수 = 평가점수 / 평가항목수

- 평가항목수 = 평가에 사용된 항목 개수("해당없음"항목 개수 제외)

상태등급	a	b	c	d	e
점수범위	100~90점	90점미만~75점	75점미만~60점	60점미만~50점	50점미만

<표 1.19> 예제 1 분야별 상태등급 산정

영역	평가 분야	평가 항목수	총점	분야별 상태		비고
				점수	등급	
관리영역	공통분야	2	7	35	e	$7 / 2 \times 10 = 35$
	개별분야	2	10	50	d	$10 / 2 \times 10 = 50$
시설영역	구조분야	12	104	86.7	b	$104 / 12 \times 10 = 86.7$
	전기분야	11	90	90.9	a	$100 / 11 \times 10 = 90.9$
합계		25				

4) 종합 『안전등급 (A~E등급)』 결정

- 종합 안전점수 산정방법

종합 안전점수 = 분야별 평가점수 X 분야별 가중치

- 분야별 상태등급 중 하나의 분야에서라도 d 또는 e등급의 판정을 받게 되면 종합 안전등급 또한 D 또는 E로 등급 결정
- 시설에 심각한 손상(전단균열, 좌굴, 파손 등) 또는 위험요인이 있거나 보수·보강 조치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고 해당분야 상태점수를 가·감점하여 안전등급 조정

안전등급	A	B	C	D	E
점수범위	100~90점	90미만~75점	75미만~60점	60미만~50점	50점미만

<표 1.20> 예제 1 종합 안전점수 산정

영역	평가 분야	분야별 상태점수	분야별 가중치(%)	종합안전점수
관리영역	공통분야	35	15%	5.3
	개별분야	50	15%	7.5
시설영역	구조분야	86.7	56%	48.5
	전기분야	90.9	14%	12.7
합계			100%	74.0
종합 안전점수에 의한 등급		C		

종합 안전점수에 의한 등급은 “C”이지만, 관리영역의 공통분야 등급이 “e”, 개별분야 등급이 “d” 이다. 한편 시설영역의 각 분야등급은 “b”이므로 옥외광고물의 위험도는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영역의 부분이 각각 “e”, “d” 등급으로 판정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종합 안전등급은 종합 안전점수에 의한 등급(<표 1.20>의 “C”)을 근거로 “C” 등급으로 판단하고 <그림 1.4>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결과조치 절차에 따라 보완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표 1.21>은 종합 안전등급 산정 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 것이다.

<표 1.21> 예제 1 종합 안전등급 산정 및 조치사항

영역	평가 분야	분야별상태등급	조치사항
관리영역	공통분야	e	옥외광고물 이력카드보완
	개별분야	d	구조도면 보완
시설영역	구조분야	b	
	전기분야	b	
종합 안전등급		C	상기보완사항 조치

1.7.2 안전점검 평가 예제 2

1) 관리영역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예

<표 1.22> 예제 2 관리영역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			
		양호	보통	불량	해당 없음	양호	보통	불량	해당 없음
공통분야	1. 이력카드 구비 및 기록여부	○				10			
	2. 비상연락망 구비여부		○				7		
소계		17/20				10	7	0	
개별분야	1. 구조설계도서의 구비여부		○				7		
	2. 전기설계도서의 구비여부	○				10			
소계		17/20				10	7	0	

2) 시설영역 평가결과 예

<표 1.23> 예제 2 시설영역 구조분야 평가결과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결과				평가 점수			
			양호	보통	불량	해당 없음	양호	보통	불량	해당 없음
구조 분야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 일치여부	1. 주요부재의 부재치수 확인		○				7		
		2. 지지구조의 접합 방법 확인		○				7		
		3. 앵커볼트의 치수 및 위치 확인		○				7		
	지지구조물 상태평가	4. 옥외광고물의 흔들림 여부 확인			○				0	
		5. 지지구조물의 콘크리트 상태평가	○				10			
	주요부재 상태평가	6. 주요부재의 부식에 대한 상태평가		○				7		
		7. 볼트 접합부의 상태평가		○				7		
		8. 용접 접합부의 상태평가		○				7		
		9. 옥외광고물 외장재 변형에 의한 상태평가			○				0	
		10. 브라켓과 옥외광고물 연결부위의 고정상태 확인			○				0	
		11. 지지구조 상태 확인				✓				✓
		12. 하부구조물의 방수처리 상태				✓				✓
	지주이용 간판	13. 지주 기초 주변 바닥 변형상태 확인 (전도유무)				✓				✓
	통행안전 상태평가	14.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
		15.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10			
소계			62/110				20	42	0	

<표 1.24> 예제 2 시설영역 전기분야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전기 분야	전선 상태	1.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			10		
		2. 노출전선의 피복손상 여부		○			0	
	배선 상태	3. 노출배선의 적합 여부	○			10		
		4. 배선 분기상태의 적합 여부	○			10		
		5. 배선 절연상태의 적합 여부	○			10		
	차단기 상태	6. 차단기의 적합 여부			✓			✓
		7. 차단기 작동상태의 적합 여부			✓			✓
	관등시설 상태	8. 관등배선 상태의 적합 여부		○			0	
		9. 방전등용 안정기의 적합 여부	○			10		
		10. 방수상태의 적합 여부	○			10		
	접지 및 피뢰설비 상태	11. 접지상태의 적합 여부	○			10		
		12. 피뢰설비의 적합 여부			✓			✓
소계			70/90			70	0	

3) 분야별 상태점수 및 등급 산정

○ 분야별 상태점수 산정방법

분야별 상태점수 = 평가점수 / 평가항목수

- 평가항목수 = 평가에 사용된 항목 개수("해당없음"항목 개수 제외)

상태등급	a	b	c	d	e
점수범위	100~90점	90점미만~75점	75점미만~60점	60점미만~50점	50점미만

<표 1.25> 예제2 분야별 상태등급 산정

영역	평가 분야	평가 항목수	총점	분야별 상태		비고
				점수	등급	
관리영역	공통분야	2	17	85	b	17 / 2 X 10 = 85
	개별분야	2	17	85	b	17 / 2 X 10 = 85
시설영역	구조분야	11	62	56.4	d	62 / 11 X 10 = 56.4
	전기분야	9	70	77.8	b	70 / 9 X 10 = 77.8
합계		24	166			

4) 종합 『안전등급 (A~E등급)』 결정

- 종합 안전점수 산정방법

$$\text{종합 안전점수} = \text{분야별 평가점수} \times \text{분야별 가중치}$$
- 분야별 상태등급 중 하나의 분야에서라도 d 또는 e등급의 판정을 받게 되면 종합 안전등급 또한 D 또는 E로 등급 결정
- 시설에 심각한 손상(전단균열, 좌굴, 파손 등) 또는 위험요인이 있거나 보수·보강 조치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고 해당분야 상태점수를 가·감점하여 안전등급 조정

안전등급	A	B	C	D	E
점수범위	100~90점	90미만~75점	75미만~60점	60미만~50점	50점미만

<표 1.26> 예제2 종합 안전점수 산정

영역	평가 분야	분야별 상태점수	분야별 가중치(%)	종합안전점수
관리영역	공통분야	85	15%	12.8
	개별분야	85	15%	12.8
시설영역	구조분야	56.4	56%	31.6
	전기분야	77.8	14%	10.9
합계			100%	68.1
종합 안전점수에 의한 등급		C		

<표 1.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 안전점수는 68.1로 산정되었고, 종합 안전점수에 의한 등급은 “C”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관리영역의 공통분야 등급이 “b”, 개별분야 등급이 “b”로서 안전관리이력카드 또는 설계도서가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시설영역의 구조분야는 “d”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전기분야는 “b”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d”등급으로 평가된 구조분야 조사항목 중 (4) 옥외광고물의 흔들림 여부, (9) 옥외광고물 외장재 변형에 의한 상태평가, (10) 브라켓과 옥외광고물 연결부위의 고정상태 확인 항목에서 “불량”으로 판정되었고, 나머지 항목은 “양호” 또는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불량”으로 조사된 항목들은 주로 옥외광고물의 지지부분이며, 이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항목들이므로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b”등급으로 평가된 전기분야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나, 조사항목 중 (2) 노출전선의 피복 손상 여부, (8) 관등배선 상태의 적합 여부 항목에서 불량으로 판정되었다. “불량”으로 조사된 항목들은 누전과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항목이므로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종합 안전등급은 종합 안전점수에 의한 등급(<표 1.26>의 “C”)보다 한 단계 낮은 “D”등급으로 판정하고, <그림 1.4>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결과조치 절차에 따라 15일 내에 광고주가 즉각적으로 보완을 하고 재점검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표 1.27>은 종합 안전등급 산정 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 것이다.

<표 1.27> 예제2 종합안전등급 산정 및 조치사항

영역	평가 분야	분야별 상태등급	조치사항
관리영역	공통분야	b	
	개별분야	b	
시설영역	구조분야	d	- 옥외광고물의 흔들림 보수 - 옥외광고물 외장재 변형 보수 - 브라켓과 옥외광고물 연결부위의 고정상태 보수
	전기분야	b	- 전선 피복의 손상 부위 보수 - 관등배선 피복의 손상 부위 보수
종합 안전등급		D	상기보완사항 조치 후 재평가

제2장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2.1 예방단계 (평상시)

2.1.1 간판설치 및 기간 연장 시 안전점검 강화

1) 안전점검 대상

- 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 대상광고물
 - 가로형간판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된 간판 (입체형 제외), 한 변 길이 10m 이상
 - 돌출간판 : 지면에서 높이 5m 이상이고, 한면 면적 1㎡이상
 - 옥상간판 : 전체 옥상간판 (높이 4m 미만의 볼링 핀 모형, 도료나 입체형 표시광고물 제외)
 - 애드벌룬 : 높이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
 - 지주이용간판 등 : 높이 4m 이상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 허가 및 점검대상 외 옥외광고물중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옥외광고물

2) 안전점검 기준 · 시기 및 방법

- 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 점검기준 : 허가사항 일치여부, 법규 위반여부, 사용자재, 접합부위, 전기설비, 통행지장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 실시 (본문 1.4 참조)
- 점검시기
 - 옥외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옥외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 시장 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 ※ 안전점검 신청서 제출 기간 : 표시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허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3) 행정사항

- 현행 모호한 안점점검기준을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가능한 기준으로 변경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시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되지 않도록 안전점검 대행기관 (옥외광고 협회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시·군에서는 읍·면·동과 합동으로 취약 옥외광고물을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로 지정 정기적인 추가 점검 실시 (연 1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특정관리 대상시설 (옥상간판 H=4m, B=3m 이상)에 대한 별도점검 (연 2회) 실시

2.1.2 풍수해대비 사전 안점점검 실시

1) 풍수해대비 사전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방법

- 점검시기 : 매년 5월~6월
- 점검대상 : 인구 밀집지역의 모든 옥외광고물(불법광고물, 허가·신고외 옥외광고물 포함)
- 점검방법 및 내용 (본문 1.4 참조)
- 시·군별로 안전점검반 편성·운영 및 권역별 책임담당자 지정
- 민·관 합동 재해방재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전예방 활동 실시
 - 구조, 전기 전문가를 포함하여 유사시 신속한 자문 및 판단 수행
 - 재해방재단 구성원 편성명단 작성 보고
- 지역 옥외광고협회 (시·군 지회), 한국구조기술사회 등과 합동으로 자체점검 및 예방활동 시 기본장비, 활동비 등 적극 지원
- 지역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및 업주, 광고주에 대한 자율점검 계도
- 불법광고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2) 행정사항

- 시·군·구에서는 자체 안전점검 계획 및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자치단체장에 보고

2.1.3 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1) 목적 및 필요성

- 한정된 행정인력 만으로 효율적인 정비 곤란

- 효과적인 사전대비 및 홍보를 위해서는 기존 민간 조직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민·관 합동 재해방재단) 필요

2) 대상 민간조직 및 역할

○ 옥외광고협회(도 및 시·군 지부)

- 옥외광고물 설치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단계별 간판 정비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지원 협조
- 현수막 설치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자율정비 및 설치자제 협조
- 태풍 내습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장비를 구비한 옥외광고 업체를 읍·면·동 단위별로 사전 지정 및 명단 보고

○ 한국구조기술사회 및 각 지역 구조기술사 사무소

- 옥외광고물 구조안전성 확보 교육 협조
- 지역별 합동안전점검 인력 협조

○ 상가번영회

- 소속 상가업주에 대한 간판 안전점검의 중요성 홍보
- 태풍 복상 등 대비·대응 단계시 상가 업주의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 업종별 협회

- 업종별 설치 간판의 특성을 고려한 소속 업체의 자체점검 확인 유도
- 요식업자 교육 등 자치단체 주관 각종 업주대상 교육시 간판 안전점검의 필요성 및 중요성 홍보 교육

2.1.4 간판 정비 및 복구 예산 사전확보

1) 예산편성 목적

- 태풍 등 자연재해로 파손된 간판이나 파손 우려가 있는 간판의 철거 및 보수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장비의 사용이 불가피
- 효율적인 간판 사전정비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임차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2) 예산규모

- 최근 5년간의 간판 피해를 감안하여 사용예산의 1.5배 편성

※ 지방재정 여건과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하여 태풍 북상기간 (7월~9월)만료 후 추경 편성 시 사용 잔액 감액 조치

3) 예산 세부내역

- 간판 철거 및 보수를 위한 장비 임차료
- 민간 인력을 활용한 신속한 정비 및 피해복구를 위한 인건비

2.1.5 경관 및 안전을 고려한 간판 정비사업의 시행

1) 사업필요성

- 도시경관 저해 및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구역에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
- 강풍에 의해 노후화 및 위험요소가 높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 확보

2) 사업내용

- 각 지자체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 강풍에 취약한 옥외광고물은 풍압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
- 기존의 대형 간판을 조형미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여 간판 규모의 최적화 추구
- 1업소 1간판 설치 원칙에 따른 간판 정비로 돌출간판 설치 최소화
- 조형미가 뛰어난 입체형 간판 설치를 통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
- 정비사업 대상지역 선정 시 노후 간판 밀집 지역에 대하여 우선 선정

3) 기대효과

- 풍압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 판류형 간판 및 돌출간판의 감소를 통하여 강풍 시 간판 파손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간판 설치를 통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 조성

2.1.6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정비 강화

1) 목적 및 필요성

- 강풍 시 파손되는 옥외광고물의 대부분이 불법광고물로 간판 파손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관리 필요
- 불법광고물 수량과 행정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관리대책 수립
- 구조안전이 확보된 간판 설치로 옥외광고물 위험 사전제거

2) 관리방안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 등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의 행정적 기반 마련
- 표시기간 연장을 미 이행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안내를 실시, 연장 미 이행 옥외광고물의 최소화 및 안전점검 누락 방지
- 설치위치 및 표시기간 등은 법적요건을 구비하였으나 허가·신고 절차를 미 이행한 옥외광고물은 양성화하여 행정관리 옥외광고물 확대
- 노후 및 안전에 취약한 불법간판을 제작·설치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2.1.7 옥외광고물 관련 기술교육 강화

1) 목적 및 필요성

- 간판 설치 완료 후 견실 시공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움
-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파손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 간판을 설치하는 옥외광고업자와 안전점검 수행자의 기술분야 교육 강화 필요

2)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3) 현 실태

- 신규 종사자, 기존 종사자 (법령 제·개정시, 시장이 인정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

은 자에 대하여 시·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실시

- 교육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에 대해 실시하며 옥외광고물 안전과 관련하여 교육이 미비한 실정임.

4) 추진계획

- 시·군 직접 또는 협회 등의 위탁 교육시 구조 및 전기 전문가를 참여시켜 법령 및 제도 교육 이외에 옥외광고물 안전(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교육 실시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기술자교육은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제4조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준의 교육이 필요함

2.2 대비단계 (태풍정보 · 예비특보 발효시)

2.2.1 취약 옥외광고물에 사전조치 강화

1) 조치시기

- 태풍정보 · 예비특보 발효시 ~ 제주도기준 태풍주의보 발효시

2) 대상광고물

- 고정광고물
 -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신고 · 신고배제 · 불법광고물 중 노후한 간판
 -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 중 대형광고물 및 시설 노후로 강풍 대비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간판 (안전등급 D, E 등급)
 - 시장 · 군수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옥외광고물
 - 건물의 고층이나 해안가 등 강풍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 유동광고물
 - 지정게시대 에 게시된 현수막, 게시틀 설치 현수막, 불법현수막
 - 도로상에 설치되어 강풍시 피해를 줄 수 있는 입간판, 공기팽창형 광고물 (에어라이트) 등

3) 조치요령

- 고정광고물
 - ① 안전점검 대상 간판
 - 업주 등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점검·관리의 필요성 및 간판의 상태에 대해 사전 공지하여 응급 정비 유도
 - 태풍소멸 후 상황종료 시까지 해당지역에 지속적인 점검순찰 강화
 - ② 신고대상 · 신고배제 · 불법간판
 - 업소주 등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우선적으로 자진 정비토록 현장조치
 - 태풍주의보 발효 시까지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급성 등을 고려 정비 추진
 -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옥외광고물 및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간판 (안전등급 D, E 등급) 등에 한하여 태풍내습 시까지 시 · 군 차원의 보수 · 보강 및 철거 추진
 - ③ 유동광고물

- 현수막
 - 지정게시대 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내습 전까지 사전철거토록 조치
 - 사설게시대 및 게시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 내습 전까지 자진 철거토록 홍보 및 계도
 - 도로상 (가로수, 가로등, 웬스)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시설물의 파손 및 인명피해 우려가 높으므로 철거 조치
- 입간판 · 공기팽창형(에어라이트) 광고물
 - 태풍내습 전까지 미철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동원하여 일괄 수거 및 업소주 자진정비 계도 조치

4) 사전 정비실적 파악 · 보고

- 보고시기 : 제주도 기준 태풍주의보 발효 시까지 정비 완료 후 즉시 보고
- 보고내용 : 옥외광고물 유형별, 조치 내용별 사전정비 실적 보고

2.2.2 시민 홍보를 통한 자율정비 · 신고 활성화

1) 필요성

- 간판은 건물외벽에 설치되어 파손 시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 ·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사유시설물인 관계로 관(官)주도의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며 업소주의 자율적인 정비 · 점검 중요
-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수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어 효과적인 정비 및 사전대비를 위해서는 불량 위험간판에 대한 민간영역의 신고 활성화 필요

2) 세부내용

- 각종 재난대비 대민 홍보 시 옥외광고물 분야에 대한 사전 정비 중요성 홍보
- 지역 상가번영회 등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자진정비 및 위험간판에 대한 신고 유도
- 업소주 자체정비 시 지역 옥외광고협회와 공조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행정 지원
- 지역별로 기 지정된 옥외광고업체 연락처 홍보 등 간판 파손 시 효율적인 조치가 가능 하도록 홍보 실시

2.2.3 옥외광고물 무료 사전점검 홍보 실시

1) 필요성

-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업소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업소주 소유 간판에 대한 안전 불감증 만연 시 강풍에 따른 피해간판 증가
- 간판정비를 위한 관련 업체, 방법, 비용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발적인 점검 부진

2) 세부내용

- 풍수해 대비단계에서 지역 옥외광고 협회와 연계한 옥외광고물 무료 사전점검 실시
- 효율적인 사전 점검을 위하여 상가건물, 상가번영회 등 점검 대상 간판의 밀집도와 취약간판의 분포를 고려하여 사전 안내 실시
- 지역 협회와의 협의 결과 및 시·군별 예산여건을 고려하여 무료 사전점검 실시
- 시·군 여건에 따라 사전점검과 경미한 보수는 무료로 시행하되,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는 보수 및 간판 철거 등은 원인자(업소주) 부담 조치
- 안내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에 대한 홍보
 - 업소주의 옥외광고물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의식 고취
 - 위험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국민 안전행동 교육

2.2.4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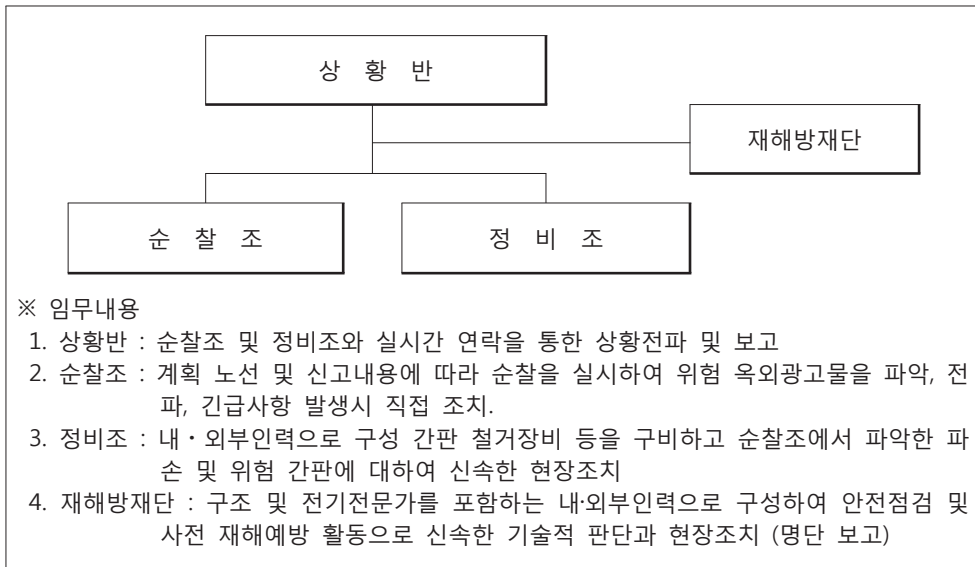
1) 행정조직

- 시·군 (구 및 읍·면·동) 태풍대비 비상근무체계 점검
- 태풍대비 매뉴얼에 따른 사전조치 지시 및 실적 보고
- 외부 순찰 및 내부 상황관리조 편성을 통한 상황처리 조직 체계 점검
- 지자체 재난상황실과 연계한 체계적인 상황관리체계 확립
- 현장 순찰조와 정비조 및 민관 합동 재해방재단을 사전 구성하여 효율적인 정비 체계 구축

2) 외부조직

- 지역옥외광고협회 및 장비·인력지원 가능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 점검
 - 간판 파손 및 위험 간판 발생시 효율적인 상황 대응을 위한 담당구역 지정

○ 대형·노후 옥외광고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간판은 간판 관리자와 연락체계 구축



2.3 대응단계 (태풍주의보 발효시)

2.3.1 옥외광고물 파손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1) 필요성

- 옥외광고물 위험징후 발견시 사전 철거·보수로 불필요한 옥외광고물의 파손 및 2차 피해예방 가능
- 옥외광고물 파손 시 철거·복구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및 인명피해 등이 발생되므로 지속적인 사전 순찰강화 필요

2) 세부내용

- 유동인구·차량이 많은 지역, 고층건물 밀집지역, 대형·노후 간판 설치 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사전 결정 순찰 실시
- 시·군, 구, 읍·면·동 등 행정단위별 구역 및 노선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예찰 시행
- 순찰조는 현장 정비반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정비대상 옥외광고물 발견시 즉시 보수토록 조치

2.3.2 파손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

1) 대상광고물

- 건축물 외곽 벽면에서 게시를 및 간판을 고정하는 앵커볼트 파손 등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벽면이용 간판
- 전도의 우려가 있거나, 간판 접합부가 파손된 지주이용 간판
- 벽면 및 건물에서 추락·전도되어 노상에 방치된 간판

2) 조치내용

- 게시를 및 앵커볼트 파손 상태를 확인하여 경미할 경우 현장 보수조치, 파손 상태가 심각하여 현장보수가 어려울 경우 철거조치
- 부분 파손으로 추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간판은 파손부분 제거 조치
 - 파손부분 제거 시 호우로 인한 감전 등 전기안전 사고를 고려한 보수 조치 병행
- 부분 전도된 지주이용 간판은 전도상태, 태풍의 소멸시기 등을 판단하여 보강 및 철거조치

- 추락·전도된 간판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므로 신속히 현장조치
- 대형광고물로 태풍 내습 시 조치가 어려운 대형 간판은 추가 파손 방지와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고 차량·보행자 이동 통로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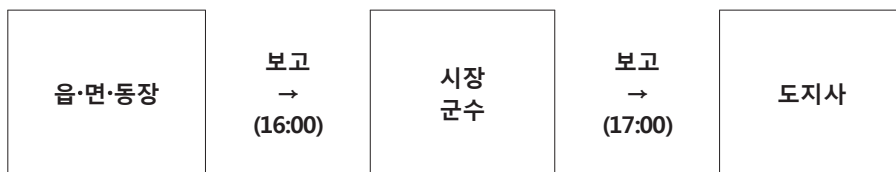
2.3.3 간판 및 인명·재산피해 상황보고

1) 보고시기

- 태풍경보 발효일 당일부터 매일 17:00까지 피해상황 보고
 - ※ 태풍경보 발효 시각 및 피해상황 등에 따라 조정가능

2) 보고방법

- 옥외광고물 피해 및 복구상황 보고
 - 간판의 종류, 피해 및 복구상황 등을 구분하여 신속하게 보고
 - ※ 간판 피해 유형상 추락과 파손으로 구분하여 보고
 - 파손 간판 개별보고 간판의 종류, 피해 상황 및 현황 등을 구분하여 신속하게 보고
- 인명피해 (중상 이상) 발생시 피해 개요를 상급기관에 즉시 유선 보고 후, 세부내용 별도 상황보고



<그림 2.1> 신고 및 보고체계

2.4 복구단계 (특보 해제시)

2.4.1 미복구 간판에 대한 조치

1) 대상광고물

- 간판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상 태풍 내습 기간 중 철거 등이 어려워 응급 복구한 간판
- 지역 옥외광고협회 및 합동 재난방재단과 합동점검 및 행정 단위별 (읍·면·동) 점검 결과 추가 파손 위험 간판
- 업소주 및 주민신고 등으로 접수된 파손 위험 간판

2) 조치내용

- 사유 시설물인 간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주 등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통보·협의하여 자진 정비토록 유도
- 추락 후 미 철거된 간판은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조치한 후 업소주 등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체 처리토록 통보
- 강풍으로 취약해진 간판의 위험성 등에 대한 홍보·계도를 통하여 자체 점검 유도
- ※ 추가적인 태풍정보 및 내습 일정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

2.4.2 최종 피해상황 파악보고

1) 보고시기

- 1차 : 태풍 소멸일 당일 17:00까지 피해상황 보고
- 2차 : 태풍 소멸 후 2일 이내 피해상황 최종보고
- ※ 태풍소멸 시각 및 피해상황 등에 따라 조정가능

2) 보고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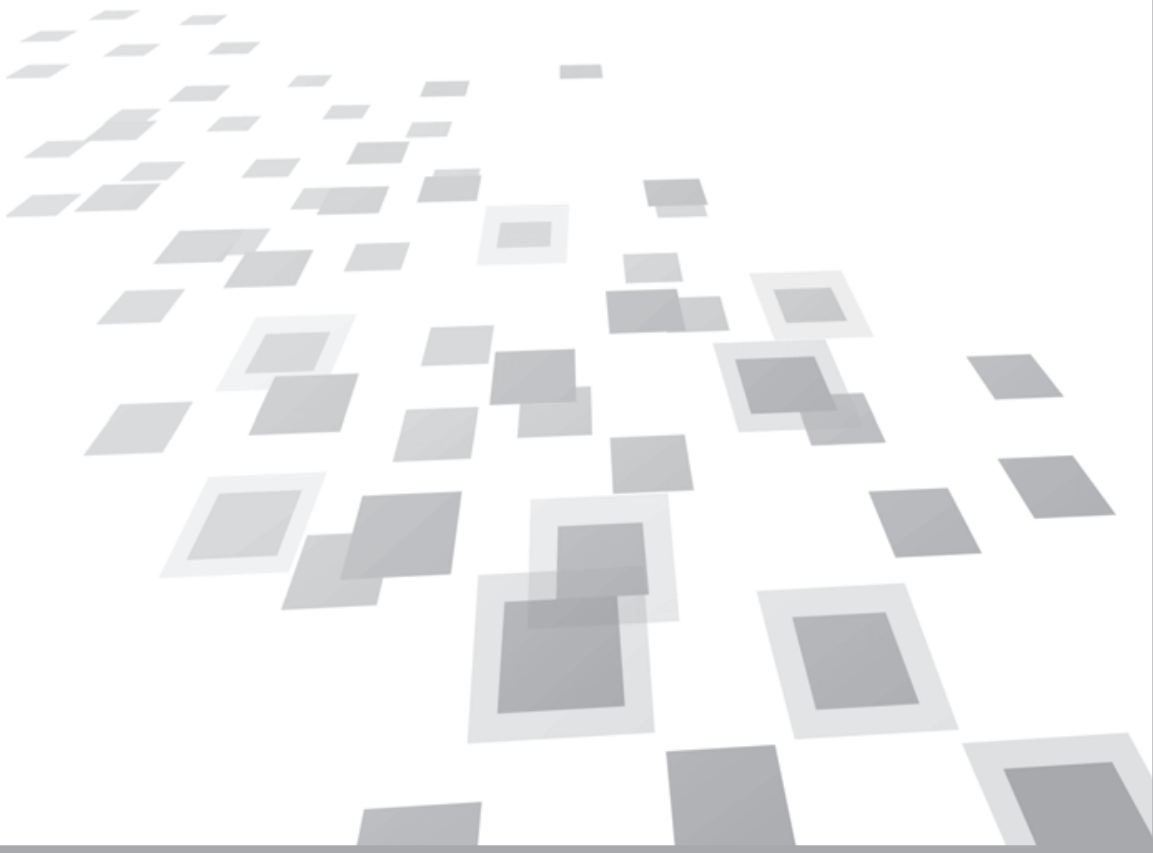
- 간판의 종류, 피해 및 복구상황, 허가 또는 신고, 불법 여부 등을 구분하여 보고
- ※ 추락된 간판과 파손된 간판을 구분하여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작성
- 상황관리와 향후 옥외광고물 정책 수립에 실효성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 보고

참 고 문 헌

- 경기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관리 매뉴얼, 2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013.06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검사 체크리스트 개발 및 안전등급제도 적용성 연구, 2009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종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2008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온라인 안전관리시스템 설계방안 연구, 2008
- 국토교통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2012
- 김영배, 안전도검사 기준집 안 만드는가, 못 만드는가, 2006
- 김영배, 안전도검사 위탁대행의 현 실태, 2005
- 김영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에서 안전도검사 기준 제정의 원칙에 관한 연구, 2006
- 대한건축학회, 건축물 하중기준 및 해설, 2009
- 소방방재청, 강풍에 의한 옥외광고구조물 피해저감을 위한 안전설치 기준 및 고성능 부착제품 개발, 2013
- 소방방재청, 도시 기후·환경 변화 적응을 위한 내풍 방재기술 개발, 2013
- 소방방재청,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지침, 2013
- 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자체안전점검 매뉴얼, 2012
- 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2009
- 안전행정부,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기준 및 구조계산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8
- “옥외광고의 지식(설계 및 시공)” 편집위원회, 옥외광고의 지식, 2005
- 한국디자인진흥원, 간판디자인 표준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2008
- 한국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 관리현황 자료집, 2012
- 한국옥외광고학회,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에 관한 표준화 연구, 2006
- 한국옥외광고학회,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에 관한 표준화 연구, 2006. 11
- 한국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매뉴얼, 2013
- 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 LA. USA, SIGN MANUAL, 2006

부록

옥외광고물 유형별 안전사고 사례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서울	-	07	07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상암동 1258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추락														
파손원인 추정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도로통제 및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서울	-	09	09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추락																
파손원인 추정	- 간판 규격에 대한 앵커상태 점검 미흡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0	-	09	-	02	-	서울	-	11	11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0년 09월 02일 시 분																								
위치(주소)	서울 강남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상가 간판이 날아가 아파트 조경수 및 유리창 파손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 피해 주민 법적 보상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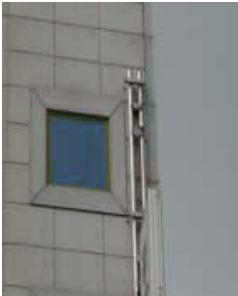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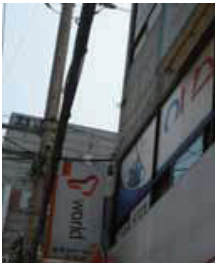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서울	-	01	01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론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괴로 인한 재산피해														
파손원인 추정	- 강풍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 규정을 벗어난 불법 간판 구조물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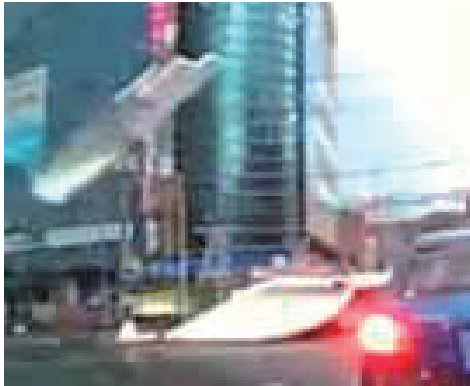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서울	-	03	03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3-3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추락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과 철거 조치 및 통제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서울	-	04	04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0-10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추락으로 인한 차량파손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과 파손된 차량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서울	-	05	05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567-49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추락														
파손원인 추정	-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서울	-	06	06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38-36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추락														
파손원인 추정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서울	-	08	08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22-27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추락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0	-	09	-	02	-	서울	-	10	10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0년 09월 02일 시 분														
위치(주소)	서울 강남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택시 파손 및 운전자 부상, 교통 정체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및 교통 통제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 피해자 법적 보상 조치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0	-	09	-	02	-	서울	-	12	12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0년 09월 2일 시 분																
위치(주소)	서울 광진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괴로 인한 재산피해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 과대한 간판 구조물의 높이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07	-	08	-	12	-	서울	-	13	13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07년 08월 12일 시 분														
위치(주소)	서울 무교동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파손원인 추정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서울	-	02	02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9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V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지주이용간판 파손 및 처리 불량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도로통제 및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인천	-	01	16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98-8 상가건물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추락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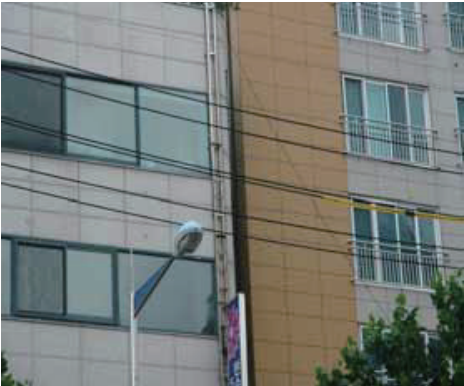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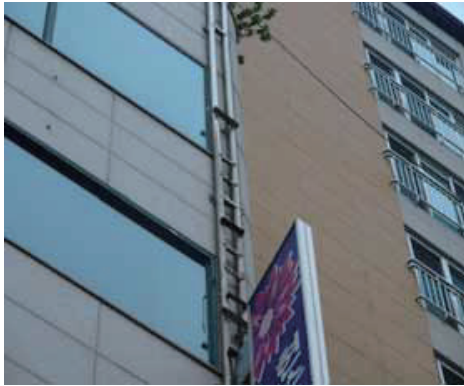
분류기호	12	-	08	-	28	-	인천	-	02	17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0-7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 강풍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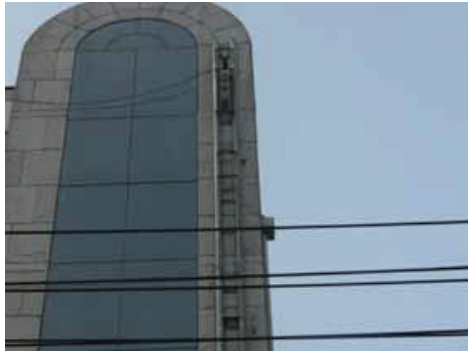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인천	-	03	18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411-4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추락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 피해 주민 법적 보상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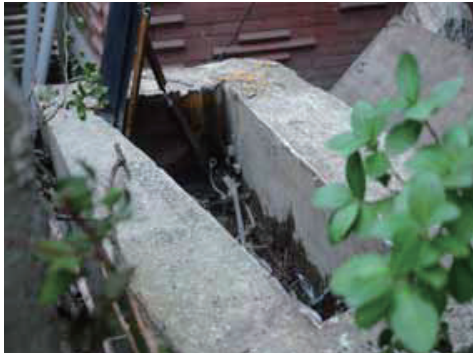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인천	-	05	20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5동 146-6 여림유원지 앞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추락														
파손원인 추정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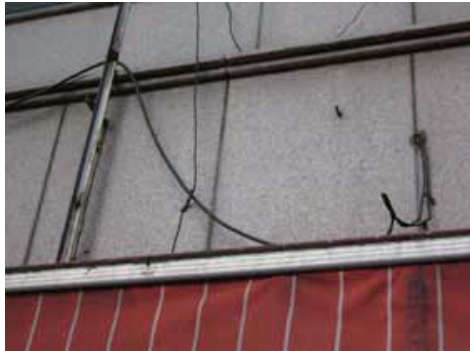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인천	-	06	21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0-7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추락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및 교통 통제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 피해자 법적 보상 조치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인천	-	07	22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4동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추락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 과대한 간판 구조물의 높이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인천	-	04	19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5동 583-11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V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상 조치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대전	-	01	14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추락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대전	-	02	15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추락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0	-	08	-	11	-	부산	-	01	32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0년 08월 11일 시 분																								
위치(주소)	부산 동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광주	-	01	33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태풍 불라벤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광주	-	03	35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태풍 불라벤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광주	-	04	36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태풍 불라벤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광주	-	05	37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태풍 불라벤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광주	-	07	39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태풍 불라벤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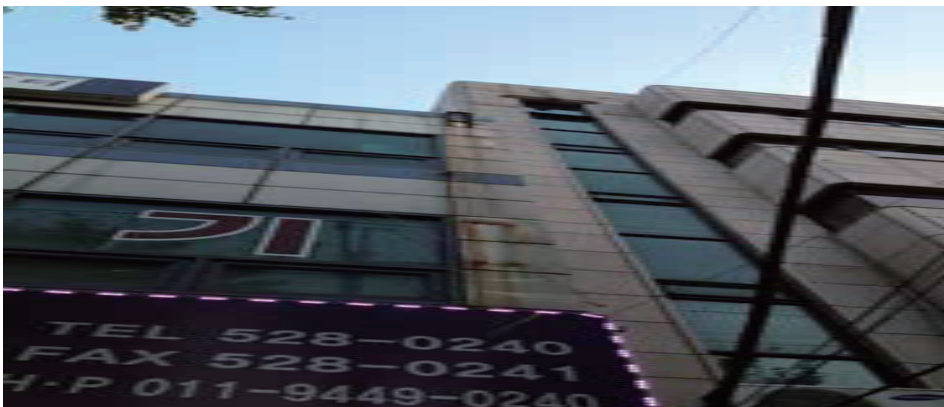
분류기호	12	-	08	-	28	-	광주	-	08	40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태풍 불라벤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광주	-	12	44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태풍 불라벤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1	-	08	-	07	-	광주	-	19	51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1년 08월 07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 동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행인 1명 간판 추락으로 머리와 팔 부상																
파손원인 추정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과 철거 조치 및 통제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광주	-	02	34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태풍 불라벤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광주	-	06	38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태풍 불라벤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광주	-	09	41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태풍 불라벤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광주	-	14	46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태풍 불라벤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광주	-	15	47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태풍 불라벤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광주	-	13	45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태풍 불라벤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1	-	08	-	07	-	광주	-	18	50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1년 08월 07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 북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추락한 간판이 도로점거 - 교통 통제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도로통제 및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광주	-	10	42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태풍 불라벤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광주	-	11	43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태풍 불라벤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광주	-	16	48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태풍 불라벤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2	-	08	-	28	-	광주	-	17	49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2년 08월 28일 시 분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론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														
파손원인 추정	- 태풍 불라벤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0	-	09	-	02	-	과천	-	01	24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0년 09월 02일 시 분																								
위치(주소)	경기 과천시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손으로 인한 재산피해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0	-	09	-	02	-	부천	-	01	28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0년 09월 02일 시 분														
위치(주소)	경기 부천시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대형 간판 파손 및 통행제한														
파손원인 추정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도로통제 및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0	-	09	-	02	-	성남	-	01	23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0년 09월 02일 시 분																
위치(주소)	경기 성남시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및 건물 유리 파손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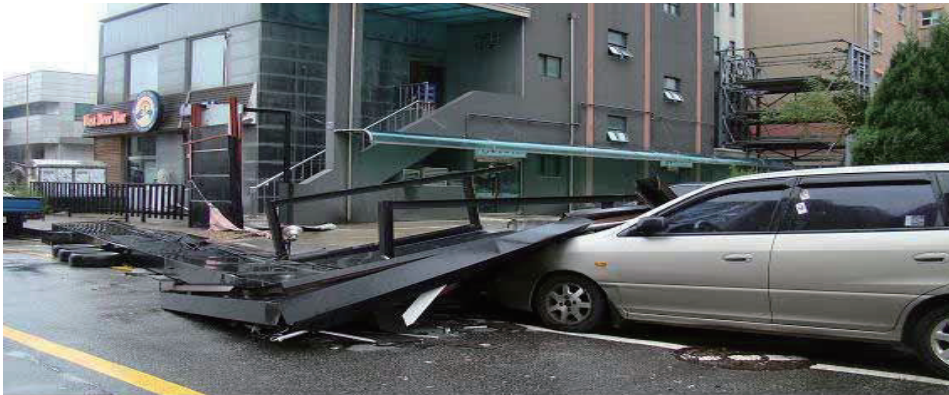
분류기호	10	-	09	-	02	-	시흥	-	01	25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0년 09월 02일 시 분														
위치(주소)	경기 시흥시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V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괴로 인한 재산피해 및 교통 정체														
파손원인 추정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0	-	09	-	02	-	시흥	-	02	26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0년 09월 02일 시 분															
위치(주소)	경기 시흥시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V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괴로 인한 재산피해 및 차량파손															
파손원인 추정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0	-	09	-	03	-	안산	-	01	27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0년 09월 03일 시 분														
위치(주소)	경기 안산시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추락으로 인한 차량파손														
파손원인 추정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과 파손된 차량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0	-	09	-	02	-	서산	-	02	30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0년 09월 02일 시 분																			
위치(주소)	충남 서산시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및 차량 파손																			
파손원인 추정	-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10	-	09	-	02	-	서산	-	03	31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10년 09월 02일 시 분														
위치(주소)	충남 서산시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V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대형 간판 파손 및 도로점거														
파손원인 추정	-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대형 간판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규격에 맞는 간판크기와 접합부 설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분류기호	09	-	07	-	14	-	서산	-	01	29	년도	월	일	장소	순번		
사고일시	2009년 07월 14일 시 분																
위치(주소)	충남 서산시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V		옥상간판		애드벌룬		
광고물용도	공공용도()										민간용도()						
광고물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 대상여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신고 배재대상(), 불법광고물() 그 외()																
피해현황	직접피해 내용										2차피해 내용						
	간판 파괴로 인한 재산피해																
파손원인 추정	- 강풍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불확실한 단속 - 간판의 접합상태 등 안전검사 미흡 - 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 문제 - 규정을 벗어난 불법 간판 구조물										복구계획		- 추락한 간판 철거 조치 - 사건으로 인한 다른 피해상황 조사 - 광고업체와 해당 간판 업주 소환 - 분기별 안전도 검사 실시 - 간판 재정비 사업 제시				



옥외광고물 안전 표준 매뉴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